

연구보고 2012-2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최은영 조혜주

머 리 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12년 9월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아직은 제도의 도입 단계로 현장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유아교육재정 운영의 자율화와 학부모의 유아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차 례

요약	1
I.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9
4. 선행연구 고찰	10
5. 연구의 제한점	14
II.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및 요구	15
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15
2.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효과 및 개선 요구	30
3. 소결	36
III.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 개발	39
1. 매뉴얼 개발 절차	39
2. 매뉴얼 구성 및 내용	40
3. 매뉴얼 활용 방안	42
IV. 결론 및 정책 제언	43
1.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43
2.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45
참고문헌	48
Abstract	50
부록	51
부록 1.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53
부록 2. 설문지	56
부록 3.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61

표 차례

〈표 I-3-1〉 설문조사 내용	9
〈표 I-3-2〉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10
〈표 II-1-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15
〈표 II-1-2〉 유치원운영위원회 비운영 이유	17
〈표 II-1-3〉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별 인원수(평균)	18
〈표 II-1-4〉 지역사회 위원 포함 여부	19
〈표 II-1-5〉 지역사회위원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	20
〈표 II-1-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간사	21
〈표 II-1-7〉 교원위원 선출방식	22
〈표 II-1-8〉 학부모위원 선출방식	23
〈표 II-1-9〉 회의개최 방식	24
〈표 II-1-10〉 회의개최 시간	25
〈표 II-1-11〉 주로 수행하는 업무(복수응답)	27
〈표 II-1-12〉 소위원회 구성(복수응답)	28
〈표 II-1-13〉 회의결과 공지 방법	29
〈표 II-2-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효과	30
〈표 II-2-2〉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만족도	31
〈표 II-2-3〉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33
〈표 II-2-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우선 개선사항	33
〈표 II-2-5〉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안건	34
〈표 II-2-6〉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35
〈표 III-2-1〉 매뉴얼 구성 및 내용	40

그림 차례

[그림 II-1-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여부 - 설립유형별	16
[그림 II-1-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별 인원수(평균) - 설립유형별	18
[그림 II-1-3] 회의개최 방식의 설립유형별 차이	24
[그림 II-1-4] 회의개최 시간의 설립유형별 차이	25
[그림 II-1-5] 주로 수행하는 일(복수응답)	27
[그림 II-1-6] 회의결과 공지 방법	29
[그림 II-2-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만족도	32
[그림 II-2-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36
[그림 III-1-1] 매뉴얼 개발 절차	39
[그림 III-2-1] 매뉴얼 구성 및 내용	41
[그림 IV-1-1]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44

요 약

1. 서론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재정 운영의 자율화와 학부모의 유아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매뉴얼을 개발함과 동시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 개선사항을 파악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함.
-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내외 선행연구 자료를 검토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매뉴얼 구성의 요소를 추출함.
 - 공사립유치원 원장·원감·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요구 파악, 매뉴얼 구성요소 검토
 - 공사립유치원(총 200개원) 원장(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요구,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함.
 -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

2.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및 요구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음.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조사대상 유치원 중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9.0%,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51.0%로 나타남.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구성이 되지 않음'이 44.1%로 나타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조사대상 기관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원대표 2.7명, 학부모대표 4.2명, 기타 1.7명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위원은 48.0%가 포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사회위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아니오'가 74.5%로 나타남. 유치원운영위원회 간사는 '유치원 교원'이 66.3%, '행정실 직원'이 30.6%로 대부분 유치원 교원이 담당하고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방식

- 교원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42.9%로 가장 높았고,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투표'로 선출되는 경우도 21.4%로 나타남.
- 학부모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43.9%로 가장 높았고,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투표'로 선출되는 경우는 34.7%로 나타남.

○ 회의개최 방식과 시간

- 회의개최 방식(횟수)으로는 '학기별 1회'가 31.6%, '의제가 있을 때마다'가 29.6%, '분기별 1회'가 28.6%, '1년에 1회'가 3.1%로 나타남.
- 회의개최 시간은 '주중주간'이 68.4%, '주중야간'이 22.4%, '주말 및 공휴일'이 6.1%, 기타 3.1%로 나타남.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와 소위원회 구성현황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이

90.8%로 가장 높았고, 소위원회 운영은 '유치원급식 소위원회'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결과 공지 방법
 - 회의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탑재'가 32.7%로 가장 높았고, '공개하지 않음'도 6.1%나 되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와 개선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운영 효과로는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30.6%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는 '만족(만족+매우만족)'이 82.7%,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이 17.3%로 '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운영의 어려움은 '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이 22.4%로 가장 높았고, 개선 사항으로는 '인력지원'이 37.0%로 나타남.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유연한 적용기준 마련'이 46.0%, '전담인력 지원'이 44.5%, '운영위원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가 5.5% 순으로 나타남.

3.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개발

- 매뉴얼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개발됨.
 - 매뉴얼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음.
 - 관련 자료(보도자료, 법규, 선행연구 등)를 토대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개념과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함.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길잡이'를 토대로 유치원에 적합한 내용을 추출하여 구성함.
 - 담당공무원과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교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구성 목차(안)을 가지고 수정·보완 의견을 수렴함.
 - 매뉴얼 구성(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장에는 법령구조, 국·공립과 사립 간 차이를 비교함.
 - 2장에는 구성, 위원선출 사항, 위원의 권한과 의무를 안내함.
 - 3장에는 기능을 통해 다루어야 할 안건, 업무내용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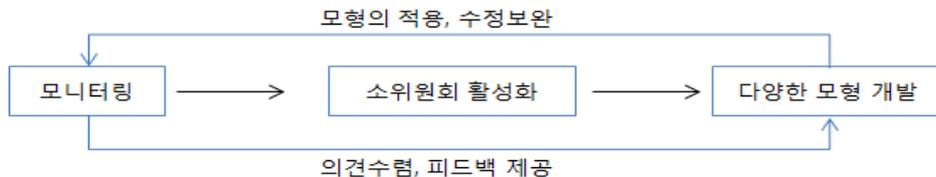
- 4장에는 회의 운영 관련 용어, 준비, 절차 등을 담음.
- 5장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관한 질문사항과 답변을 수록함.

- 매뉴얼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현장의 요구를 담아 개발되었으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기관유형에 따른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의 안착을 지원해야 함.
- 다양한 소위원회 활성화
 - 소위원회를 구성을 제도화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함.
-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개발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의미를 훼손하지 범위 내에서 유치원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독립적인 운영 방안을 포함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사례수집과 공유가 이루어져야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나.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지역사회인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의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참여인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사회인사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참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두 가지 트랙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의무 이수과정과 선택 이수과정으로 나누어 전문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함.
- 교원위원의 업무 경감
 - 간사를 담당하는 교원위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력지원도 필요하지만 인센티브와 가산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인력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재정 소요와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교원위원의 추가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매뉴얼 개발, 사례 공유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 추가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공사립유치원의 다양한 특성에 근거한 세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와 홍보 방안 마련
 - 회의시간의 융통적인 조정을 통해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함.
 - 본 연구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만족도를 고려하지 못하였음에도 참여인력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참여자와 수혜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을 결정하였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우수 교원 배치·활용, 유아교육지원체계 강화의 5개 정책분야에 대해 각각 5개씩 총 25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진다. 이들 과제 중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분야는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재무회계 규칙,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급식, 종일반 운영, 예·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 경비 책정 등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대표, 학부모대표와 지역사회인사 등 5~9인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고 밝히고 있다. 이에 2010년 2월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시행(안)이 마련되어 국립과 단설유치원에서 시범 운영을 하였으며, 2011년 9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여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을 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2010년에는 국립유치원과 공립단설유치원에 우선 설치하여 시범 적용하며,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설치하고, 2011년에는 전임원감이 있는 병설유치원, 2012년에는 전면 실시하되, 2학급이하 병설유치원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고, 201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2년 개정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3, 부록 1 참조).

이와 같이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유치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95년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기에 학교장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성열·공동배, 2007).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학교회계제도 도입과 학교발전기금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다(송기창, 2011).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치원과 학부모의 의견과 요구를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3. 20)로 유아교육재정 운영의 자율화와 학부모의 유아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현재 제도의 도입단계에 있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의 연구¹⁾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경험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의 특성에 근거한 세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실효성 있는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셋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1) 2011년 시범운영의 결과를 제시함.

개발하였다.

넷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자료를 검토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구성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나. 면담 조사

공사립유치원 원장, 원감, 교사 각각 2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매뉴얼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였다.

다. 설문 조사

공사립유치원(공립 100개, 사립 100개, 총 200개원) 원장(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요구와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I-3-1>과 같다.

<표 I-3-1> 설문조사 내용

대 상	설문조사 내용
공사립유치원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 운영위원·간사의 구성 및 선출 - 회의개최 시기·횟수 및 결과공개 방식 - 소위원회 구성 현황 -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효과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요구 및 개선방안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국·공립(병설, 단설)유치원 원장(감) 100명, 사립(법인,

사인)유치원의 원장(감) 100명으로 총 200명이다.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여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원장(감)경력은 10년 이상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의 비율은 각각 34.0%, 34.5%, 31.5%이다. 직위별로는 원장이 61.0%이고, 원감이 39.0%였으며, 연령은 만 50~59세가 56.5%로 가장 많았다.

〈표 1-3-2〉 조사대상의 일반적 배경

		단위: %(명)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원장(원감) 경력		지역별	
5년 미만	33.5(67)	대도시	34.0(68)
5~10년 미만	25.0(50)	중소도시	34.5(69)
10년 이상	41.5(83)	읍면지역	31.5(63)
직위		유치원 설립유형	
원장	61.0(122)	국공립	50.0(100)
원감	39.0(78)	사립	50.0(100)
학급규모		유치원 설립유형(세부)	
3학급 미만	2.0(4)	국립	1.0(2)
3~6학급 미만	59.0(118)	공립 단설	22.5(45)
6학급 이상	39.0(78)	공립 병설	26.5(53)
		사립 법인	16.5(33)
		사립 사인	33.5(67)
계		계	100.0(200)

라. 자문회의 개최

전문가 집단(교수, 관련 부처담당자, 장학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4. 선행연구 고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현재 도입단계이기에 관련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태로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의 연구가 유일하지만 2011년 유치원운영위원회 시범운영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구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학교 운영이 투명해졌으며(정수현, 2008; 김병찬, 2007), 학부모나 지역인사의 학교 운영에 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어 학교체제가 민주화 되고(김성열, 2006; 2007),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며(정수현, 2008),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주체들에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다시금 인식시켰다(김성열, 2006; 2007)고 하였다. 또한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좋은 영향을 주며(김성열, 2006),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의 적절한 교사 참여는 교사의 직무만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찬언, 2009)고 밝히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이 투명해지고, 학교 체제가 민주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구성원의 책무성과 참여 교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반면,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들도 적지 않다. 먼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위주로 진행되기 쉽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학교의 위계적 문화에서 기인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의 권한과 개입에 관한 것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은 교장에게 있으며(김병찬, 2007),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과 별개인 독립기구라고 인식하지 않고(박철민, 2012), 권위에 굴복하는 경향을 보이거나(김병주, 2005), 또한 교장, 교사, 학부모 간의 위계적 관계 문화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방해하고(정수현, 2005), 토론 보다는 결정 중심으로 진행되어(신상명, 2007) '안전 상정-제안 설명-이의 여부 확인-원안 확정'의 형식적 심의를 할 뿐이어서(유경선, 2011), 학교운영위원회가 결국에는 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할 뿐(김성열, 2006)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라는 위계적 체계로 위축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안으로, 학교장과는 별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확립하고(박철민, 2012),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식·비공식적 의사소통체제를 개편하고 개방적·양방향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박상완, 2007)고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을 제외한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전문지식과 학교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비전문성의 특성을 보이고(김병주, 2005), 따라서 깊이 있는 이해가 아니라 '상식적' 수준의 이해에 그쳐 운

영위원 모두의 동등한 토의나 논의가 아닌, 보고받는 식의 회의가 되어 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김병찬, 2007),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학교장과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신상명, 2007)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자율적이어서 참여하는 위원은 일부이며(정수현, 2005), 자기발전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는(김병주, 2005) 실정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들의 비전문적·비대표적 특성에 대한 방안으로는 전문성 함양 연수기회를 제공(김병찬, 2007)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수행능력을 향상하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동반자적 의식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성열, 2006). 또한 다양한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법제화, 자생조직의 법제화로 자율적·민주적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 등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전문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박철민, 2012) 있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대표성 문제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 집단의 참여와 관심 부족으로 투표 없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신상명, 2007) 공감대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들이 학교공동체로의 연계에 서투르다(김병주, 2005)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또한 그 자체가 대부분 교육활동내용이 아닌 행정업무 중심이거나(김병찬, 2007), 때로는 매우 사소하다 못해 학교장이나 교사가 결정해서 시행해도 되는 내용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어서(신상명, 2007), 궁극적 목표인 교육의 질 제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정수현, 2005)고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행정중심의 안건에 편중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방안으로는 궁극적 목적인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의 연계가 필요하며(김병찬, 2007), 학교정보공개법을 마련하여 행정중심이 아닌 교육중심으로 나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서정화, 2005).

한편,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의 문제로 전체 구성원들에게 회의결과가 개방되지 않고 일부에 집중되는 정보유통의 한계가 있으며(박상완, 2007), 특히 일반교사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 교사 간, 일반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 학부모 간,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은 거의 없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들이 각 집단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고 단지 개인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다(김병찬, 2007)는 지적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보유통과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델을 다양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

사결정 체계를 공고히 하며, 열린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김성열, 2006), 학교교육 목표를 명료화하여 이를 공유하며 의사소통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박상완, 2007).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시간 등 참여 가능한 시간의 문제로 근무 시간 내에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려우며(유경선, 2011), 또한 아직 소위원회의 활동이 부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저해한다(정수현, 2005)고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이 주로 근무시간에 96.9%가 이루어진다는 조사결과는 직장인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과 후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개최하거나 직장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유경선, 2011).

이 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조와 운영을 재정비하고, 외부기관 또는 학교 구성원과 관계자들에 의한 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박찬언, 2009)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심의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확대하고, 대부분의 사항에서 의결 기능을 법제화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하여야 한다(박철민, 2012)는 의견이 있으며, 학교의 실질적 교육과정 편성권, 인사권, 재정권이 학교로 이관되는 학교중심 책임경영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제시(서정화, 2005)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특히 예·결산 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신상명, 2007)고 보았으며,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유경선, 2011).

한편, 나정(2002)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유치원 운영에 주는 시사점으로 유치원은 학교보다 더 공사립의 설립배경 차이를 고려해야 하며, 유치원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와 유치원은 조직 분위기와 문화가 상이할 수 있고, 규모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그대로 차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특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써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향후 추진 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단기 연구과제로 연구 기간과 예산상의 제한이 있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전면적 시행일(2012. 9) 이후 충분한 기간과 조사대상 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각 시도별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가 11월 중 통과 예정으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에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유치원운영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범 운영위원회와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포함하여 현행 법령과 비교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표본 집단에 포함되어 조사 결과가 현행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나타난 경우도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Ⅱ.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및 요구

본 장에서는 공사립유치원장(감) 2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어려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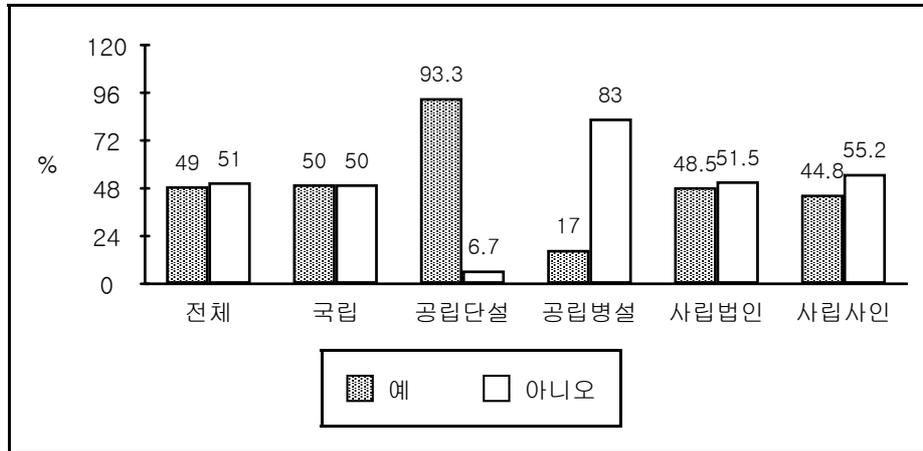
가. 운영 현황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예'에 응답한 비율은 49.0%, '아니오' 51.0%로 응답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립유치원은 '예'와 '아니오'가 각각 50%, 공립단설은 '예'가 93.3%이고, 공립병설, 사립법인과 사립사인은 '아니오'가 각각 83.0%, 51.5%, 55.2%로 나타났으며,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국공립은 '예'가 52.0%, 사립은 46.0%로 사립유치원의 운영 비율이 다소 낮았다.

〈표 II-1-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여부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사례수
전체	49.0	51.0	100.0(200)
설립유형(세부)			
국립 ²⁾	50.0	50.0	100.0(2)
공립단설	93.3	6.7	100.0(45)
공립병설	17.0	83.0	100.0(53)
사립법인	48.5	51.5	100.0(33)
사립사인	44.8	55.2	100.0(67)
설립유형			
국공립	52.0	48.0	100.0(100)
사립	46.0	54.0	100.0(100)

2) 교육통계연보(2011)에 의하면 전국의 국립유치원 수는 총 3개원으로 본 조사에는 이 중 2개의 국립유치원이 포함되었음.



[그림 II-1-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여부 - 설립유형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102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원구성이 안됨'이 44.1%,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이 21.6%,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운영'이 9.8%로 나타나 대다수의 유치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위원구성이 안 되는 점을 들었다.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과 공립병설은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이 각각 100.0%, 47.7%로 가장 높았고, 공립단설과 사립법인, 사립사인은 '위원구성이 안됨'이 각각 66.7%, 76.5%, 70.3%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은 독립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이유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이 45.8%, 사립은 '위원구성이 안됨'이 72.2%로 높게 나타나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위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거나 방과 후 운영위원회로 대체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도 있어 본 연구의 조사시점까지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1-2〉 유치원운영위원회 비운영 이유

단위: %(명)

구분	위원 구성이 안됨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로 운영	기타	사례수
전체	44.1	21.6	9.8	24.5	100.0(102)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100.0	0.0	0.0	100.0(1)
공립단설	66.7	0.0	0.0	33.3	100.0(3)
공립병설	9.1	47.7	22.7	20.5	100.0(44)
사립법인	76.5	0.0	0.0	23.5	100.0(17)
사립사인	70.3	0.0	0.0	29.7	100.0(37)
설립유형					
국공립	12.5	45.8	20.8	20.8	100.0(48)
사립	72.2	0.0	0.0	27.8	100.0(54)

나. 구성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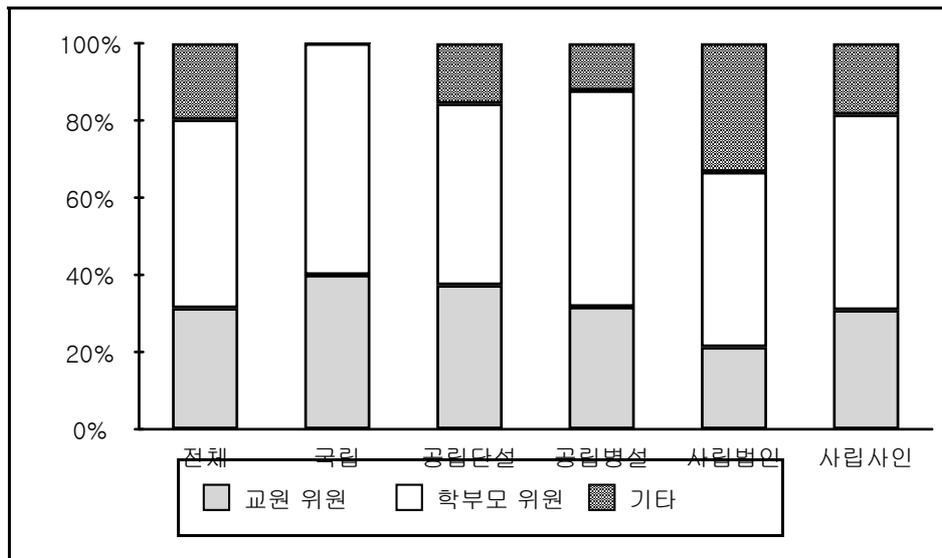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별 평균 인원수를 살펴보면, 교원 위원 2.7명, 학부모 위원 4.2명, 기타 1.7명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학부모가 다른 구성인원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은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학부모 위원이 60~70%, 교원 위원이 30~40% 포함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부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교원 위원은 국립 4.0명, 공립단설 3.1명, 공립병설 2.6명, 사립법인 2.3명, 사립사인 2.5명이며, 학부모 위원은 국립 6.0명, 공립단설 3.9명, 공립병설 4.6명, 사립법인 4.9명, 사립사인 4.1명으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교원 위원은 국공립 3.0명, 사립 2.4명, 학부모 위원은 국공립 4.1명과 사립 4.4명, 기타는 국공립 1.3명과 사립 2.2명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법인과 관계된 사람, 퇴직교사, 자문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거나 지역위원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어 교원과 학부모 외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3〉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별 인원수(평균)

단위: 명

구분	유치원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기타		사례수
	M	SD	M	SD	M	SD	
전체	2.7	1.0	4.2	3.9	1.7	2.3	98
설립유형(세부)							
국립	4.0	.	6.0	.	.	.	1
공립단설	3.1	0.7	3.9	1.4	1.3	1.2	42
공립병설	2.6	1.0	4.6	2.2	1.0	0.0	9
사립법인	2.3	1.2	4.9	2.6	3.6	2.8	16
사립사인	2.5	1.2	4.1	2.2	1.5	0.7	30
설립유형							
국공립	3.0	0.8	4.1	1.6	1.3	1.1	52
사립	2.4	1.2	4.4	2.3	2.2	1.9	46



[그림 II-1-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별 인원수(평균) - 설립유형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위원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예'가 48.0%, '아니오'가 52.0%로 나타나 지역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57.6%, 57.1%, 중소도시는 지역위원 포함 여부에 '예'라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으로는 국립과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

사인은 모두 ‘아니오’가 각각 100.0%, 66.7%, 81.3%, 53.3%로 높았으며 공립단설의 경우는 ‘예’가 64.3%로 높았고,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은 ‘예’가 57.7%, ‘사립’은 ‘아니오’가 63.0%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의 지역사회위원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지역사회 위원 포함 여부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사례수
전체	48.0	52.0	100.0(98)
지역별			
대도시	42.4	57.6	100.0(33)
중소도시	56.8	43.2	100.0(37)
읍면지역	42.9	57.1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100.0	100.0(1)
공립단설	64.3	35.7	100.0(42)
공립병설	33.3	66.7	100.0(9)
사립법인	18.8	81.3	100.0(16)
사립사인	46.7	5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57.7	42.3	100.0(52)
사립	37.0	63.0	100.0(46)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예’가 25.5%, ‘아니오’가 74.5%로 나타나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은 ‘아니오’ 응답 비율이 각각 73.7%, 75.0%, 75.0%로 유사하였고, 세부 설립유형별로도 ‘아니오’에 응답한 비율이 국립 100.0%, 공립단설 73.3%, 공립병설 83.3%, 사립법인 76.9%, 사립사인 68.8%로 모두 높았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도 ‘아니오’가 국공립 77.3%, 사립 72.4%로 나타나 지역사회위원 참여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표 II-1-5〉 지역사회위원회의 포함 여부에 대한 의견

구분	단위: %(명)		
	예	아니오	사례수
전체	25.5	74.5	100.0(51)
지역별			
대도시	26.3	73.7	100.0(19)
중소도시	25.0	75.0	100.0(16)
읍면지역	25.0	75.0	100.0(16)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100.0	100.0(1)
공립단설	26.7	73.3	100.0(15)
공립병설	16.7	83.3	100.0(6)
사립법인	23.1	76.9	100.0(13)
사립사인	31.3	68.8	100.0(16)
설립유형			
국공립	22.7	77.3	100.0(22)
사립	27.6	72.4	100.0(29)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간사로는 ‘유치원 교원’이 66.3%, ‘행정실 직원’이 30.6%, 기타가 3.1%로 나타나 ‘유치원 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으로는 국립,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모두 ‘유치원 교원’이 각각 100.0%, 77.8%, 81.3%, 90.0%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공립단설의 경우만 ‘행정실 직원’이 59.5%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국공립의 경우는 ‘행정실 직원’이 50.0%, 사립은 ‘유치원 교원’이 87.0%로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규모별로도 ‘유치원 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3학급 미만 100.0%³⁾, 3~6학급 미만 79.5%, 6학급 이상 53.8%로 나타나 소규모 학급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간사는 모두 유치원 교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의 조사대상 유치원에는 3학급 미만이 2개원으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해석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

〈표 II-1-6〉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간사

구분	단위: %(명)			
	유치원 교원	행정실 직원	기타	사례수
전체	66.3	30.6	3.1	100.0(9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100.0(1)
공립단설	40.5	59.5	0.0	100.0(42)
공립병설	77.8	11.1	11.1	100.0(9)
사립법인	81.3	12.5	6.3	100.0(16)
사립사인	90.0	6.7	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48.1	50.0	1.9	100.0(52)
사립	87.0	8.7	4.3	100.0(46)
규모				
3학급 미만	100.0	0.0	0.0	100.0(2)
3~6학급 미만	79.5	13.6	6.8	100.0(44)
6학급 이상	53.8	46.2	0.0	100.0(52)

다. 위원 선출방식

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투표' 21.4%, '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가 16.3%,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가 9.2%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각각 100.0%, 66.7%, 55.6%로 가장 높았고, 사립법인에서는 '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가 37.5%, 사립사인에서는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65.4%, 사립은 '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가 34.8%로 나타났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3학급에서는 '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와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각각 50.0%로 나타났고, 3~6학급 미만과 6학급 이상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각각 40.9%, 46.2%로 높게 나타나 사립유치원과 소규모 유치원은 원장의 지명,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거수투표로 선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7〉 교원위원 선출방식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가타	사태수
전체	42.9	9.2	16.3	21.4	10.2	100.0(9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66.7	11.9	0.0	14.3	7.1	100.0(42)
공립병설	55.6	11.1	0.0	11.1	22.2	100.0(9)
사립법인	31.3	6.3	37.5	12.5	12.5	100.0(16)
사립사인	10.0	6.7	33.3	40.0	10.0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65.4	11.5	0.0	13.5	9.6	100.0(52)
사립	17.4	6.5	34.8	30.4	10.9	100.0(46)
규모						
3 학 급 미만	0.0	0.0	50.0	50.0	0.0	100.0(2)
3~6학급 미만	40.9	2.3	25.0	20.5	11.4	100.0(44)
6학급 이상	46.2	15.4	7.7	21.2	9.6	100.0(52)

주: ①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②전체 회의에서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 ③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 ④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43.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34.7%, '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 6.1%,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가 3.1%로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법인은 모두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100.0%, 57.1%, 77.8%, 43.8%의 비율을 보였으며, 사립사인은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60.0%로 가장 높았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61.5%, 사립은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45.7%로 나타났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3학급 미만은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50.0%, 3~6학급 미만은 '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가 40.9%, 6학급 이상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

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50.0%로 나타나 학부모위원 선출방식으로 사립유치원과 소규모유치원은 본인희망에 의한 거수투표로 선출되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1-8〉 학부모위원 선출방식

구분	단위: %(명)					사례수
	①	②	③	④	기타	
전체	43.9	3.1	6.1	34.7	12.2	100.0(98)
지역별						
대도시	51.5	0.0	6.1	30.3	12.1	100.0(33)
중소도시	43.2	8.1	5.4	35.1	8.1	100.0(37)
읍면지역	35.7	0.0	7.1	39.3	17.9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57.1	2.4	0.0	26.2	14.3	100.0(42)
공립병설	77.8	0.0	0.0	22.2	0.0	100.0(9)
사립법인	43.8	12.5	6.3	18.8	18.8	100.0(16)
사립사인	13.3	0.0	16.7	60.0	10.0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61.5	1.9	0.0	25.0	11.5	100.0(52)
사립	23.9	4.3	13.0	45.7	13.0	100.0(46)
규모						
3 학 급 미만	0.0	0.0	0.0	50.0	50.0	100.0(2)
3~6학급 미만	38.6	2.3	9.1	40.9	9.1	100.0(44)
6학급 이상	50.0	3.8	3.8	28.8	13.5	100.0(52)

주: ①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②전체 회의에서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 ③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 ④본인 희망에 의해 전체 회의에서 거수로 투표

라. 회의개최 방식과 시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최 방식으로는 '학기별 1회'가 31.6%, '의제가 있을 때마다'가 29.6%, '분기별 1회'가 28.6%, '1년에 1회'가 3.1%로 나타났으며,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과 공립병설이 '분기별 1회'를 가장 많이 응답하여 각각 100.0%와 66.7%였고, 공립단설은 '의제가 있을 때마다'가 42.9%, 사립법인과 사립사인은 '학기별 1회'가 각각 50.0%와 60.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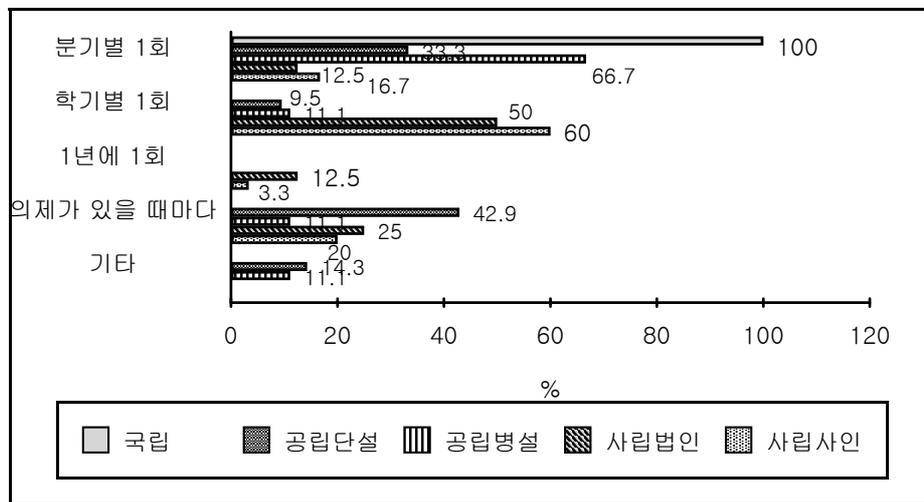
국공립과 사립으로 보면 국공립 전체는 '분기별 1회'가 40.4%, 사립 전체는 '학기별 1회'가 56.5%로 나타났다. 유치원 규모별로는 3학급 미만과 3~6학급 미만은 '학기별 1회'가 각각 100.0%, 36.4%, 6학급 이상은 '분기별 1회'와 '의제가

있을 때마다'가 동일하게 32.7%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과 6학급 미만의 유치원
은 학기별 1회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1-9〉 회의개최 방식

단위: %(명)

구분	분기별 1회	학기별 1회	1년에 1회	의제가 있을 때마다	기타	사례수
전체	28.6	31.6	3.1	29.6	7.1	100.0(9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33.3	9.5	0.0	42.9	14.3	100.0(42)
공립병설	66.7	11.1	0.0	11.1	11.1	100.0(9)
사립법인	12.5	50.0	12.5	25.0	0.0	100.0(16)
사립사인	16.7	60.0	3.3	20.0	0.0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40.4	9.6	0.0	36.5	13.5	100.0(52)
사립	15.2	56.5	6.5	21.7	0.0	100.0(46)
규모						
3학급 미만	0.0	100.0	0.0	0.0	0.0	100.0(2)
3~6학급 미만	25.0	36.4	6.8	27.3	4.5	100.0(44)
6학급 이상	32.7	25.0	0.0	32.7	9.6	100.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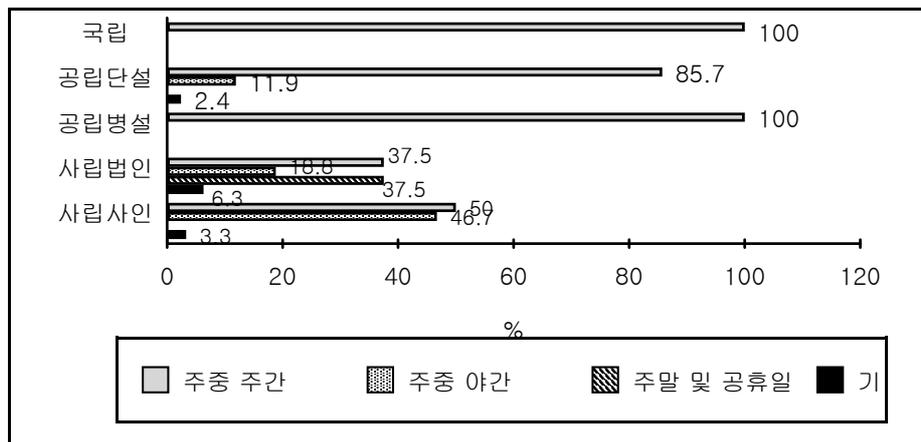
[그림 II-1-3] 회의개최 방식의 설립유형별 차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중 주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고, '주중 야간'이 22.4%, '주말 및 공휴일'이 6.1%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주중 주간'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72.7%, 78.4%, 50.0%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II-1-10〉 회의개최 시간

단위: %(명)

구분	주중 주간	주중 야간	주말 및 공휴일	기타	사례수
전체	68.4	22.4	6.1	3.1	100.0(98)
지역별					
대도시	72.7	27.3	0.0	0.0	100.0(33)
중소도시	78.4	13.5	5.4	2.7	100.0(37)
읍면지역	50.0	28.6	14.3	7.1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85.7	11.9	0.0	2.4	100.0(42)
공립병설	100.0	0.0	0.0	0.0	100.0(9)
사립법인	37.5	18.8	37.5	6.3	100.0(16)
사립사인	50.0	46.7	0.0	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88.5	9.6	0.0	1.9	100.0(52)
사립	45.7	37.0	13.0	4.3	100.0(46)



[그림 II-1-4] 회의개최 시간의 설립유형별 차이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사인 모두 '주중 주간'이 가장 높아 각각 100.0%, 85.7%, 100.0%, 50.0%을 나타냈고 사립법인의 경우 '주중 주간'과 '주말 및 공휴일'이 각각 37.5%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중 주간'이 국공립 88.5%, 사립 45.7%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주중 주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사립사인은 주중 야간이 46.7%, 사립법인은 주말 및 공휴일 37.5%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의개최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1-10 참조).

마. 수행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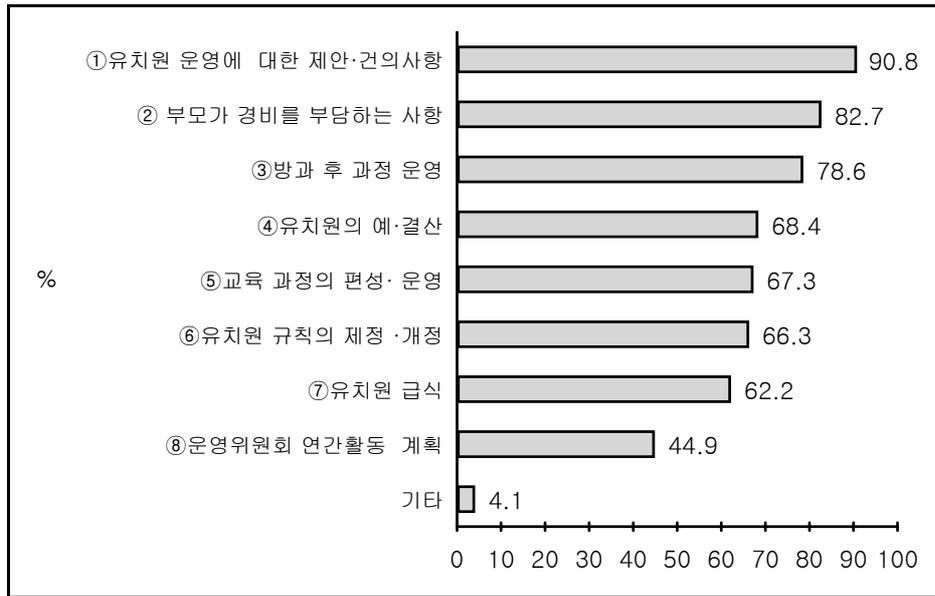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이 9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원북·졸업앨범·체험활동 등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82.7%, '방과 후 과정 운영'이 78.6%, '유치원의 예·결산'이 68.4%,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67.3%, '유치원 규칙의 제정·개정'이 66.3%, '유치원급식'이 62.2%, '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이 44.9%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의 경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 '원북·졸업 앨범·체험 활동 등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의 예·결산',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유치원 규칙의 제정·개정', '유치원 급식'이 모두 100.0%로 나타났으며, 공립단설은 '원북·졸업 앨범·체험 활동 등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97.6%로 가장 높았고, 공립병설은 '원북·졸업 앨범·체험 활동 등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방과 후 과정 운영',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이 모두 100.0%이며, 사립법인과 사립사인은 모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이 각각 81.3%, 9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 전체는 '원북·졸업 앨범·체험 활동 등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가장 높은 98.1%,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이 89.1%로 나타났다. 한편, 수행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업무로는 공립단설은 '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 40.5%, 공립병설은 '유치원급식' 관련 사항 44.4%, 사립법인은 '유치원 예·결산', '교육과정 편성·운영', '유치원규칙의 제정·개정'이 각각 37.5%로 나타났으며, 사립사인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40.0%로 가장 낮았고, '유치원 예·결산'에 관한 사항도 46.7%로 나타났다.

〈표 II-1-11〉 주로 수행하는 업무(복수응답)

구분	단위: %, 명								기타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90.8	82.7	78.6	68.4	67.3	66.3	62.2	44.9	4.1	9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	0.0	1
공립단설	92.9	97.6	95.2	95.2	90.5	92.9	81.0	40.5	4.8	42
공립병설	88.9	100.0	100.0	66.7	100.0	55.6	44.4	55.6	0.0	9
사립법인	81.3	68.8	62.5	37.5	37.5	37.5	56.3	43.8	12.5	16
사립사인	93.3	63.3	56.7	46.7	40.0	46.7	43.3	50.0	0.0	30
설립유형										
국공립	92.3	98.1	96.2	90.4	92.3	86.5	75.0	42.3	3.8	52
사립	89.1	65.2	58.7	43.5	39.1	43.5	47.8	47.8	4.3	46

주: ①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 ② 원복·졸업 앨범·체험 활동 등 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③방과 후 과정 운영 ④유치원의 예·결산 ⑤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⑥유치원 규칙의 제정·개정 ⑦유치원 급식 ⑧운영위원회 연간활동 계획



[그림 II-1-5] 주로 수행하는 일(복수응답)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치원급식 소위원회'를 39.8%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었으며, '방과 후 과정 운영소위원회'

36.7%,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 부담경비 관련 소위원회' 34.7%, '유치원운영에 관한 제안 소위원회' 33.7%, '교육과정편성·운영 소위원회' 28.6%, '유치원규칙 제정·개정 소위원회'와 '유치원의 예·결산 소위원회'가 각각 25.5%, '운영 위원회 연간활동 관련 소위원회' 19.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은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 부담경비 관련 소위원회'가 100.0%, 공립단설은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가 59.5%, 공립병설은 '방과 후 과정 운영 소위원회',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제안 소위원회', '교육과정 편성·운영 소위원회'가 33.3%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사립법인인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 '방과 후 과정 운영 소위원회'가 각각 43.8%, 사립사인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제안 소위원회'가 가장 높은 40.0%로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은 '유치원 급식 소위원회'가 48.1%, 사립은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제안 소위원회'가 39.1%로 가장 많이 구성되어 있었다.

〈표 II-1-12〉 소위원회 구성(복수응답)

구분									단위: %,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가타	사례수
전체	39.8	36.7	34.7	33.7	28.6	25.5	25.5	19.4	24.5	98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
공립단설	59.5	38.1	31.0	28.6	38.1	33.3	35.7	11.9	28.6	42
공립병설	0.0	33.3	33.3	33.3	22.2	22.2	11.1	11.1	44.4	9
사립법인	43.8	43.8	37.5	37.5	18.8	18.8	18.8	25.0	25.0	16
사립사인	23.3	33.3	36.7	40.0	23.3	20.0	20.0	30.0	13.3	30
설립유형										
국공립	48.1	36.5	32.7	28.8	34.6	30.8	30.8	11.5	30.8	52
사립	30.4	37.0	37.0	39.1	21.7	19.6	19.6	28.3	17.4	46

주: ①유치원 급식 소위원회 ②방과 후 과정 운영 소위원회 ③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 부담 경비 관련 소위원회 ④유치원 운영에 관한 제안 소위원회 ⑤교육 과정편성·운영 소위원회 ⑥유치원 규칙제정·개정 소위원회 ⑦유치원의 예·결산 소위원회 ⑧운영 위원회 연간활동 관련 소위원회

바. 회의결과 공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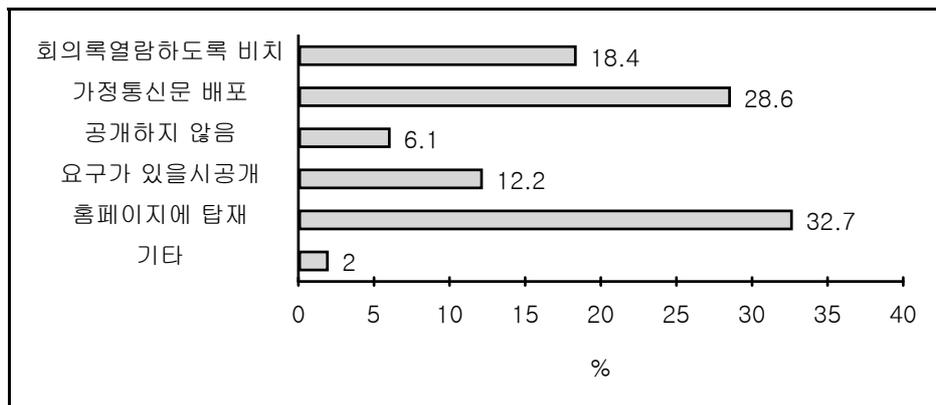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탑재'가 32.7%로 가장 높았고, '가정통신문 배포'가 28.6%, '회의록 열람하도록 비치'가 18.4%, '요구가 있을 시 공개'가 12.2%, '공개하지 않음'도 6.1%가 있었다. 지역

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홈페이지에 탑재'가 36.4%, 중소도시는 '가정통신문 배포'와 '홈페이지에 탑재'가 동일하게 32.4%, 읍면지역은 '가정통신문 배포'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1-13〉 회의결과 공지 방법

단위: %(명)

구분	회의록 열람하도록 비치	가정 통신문 배포	공개하지 않음	요구가 있을시 공개	홈페 이지에 탑재	기타	사례수
전체	18.4	28.6	6.1	12.2	32.7	2.0	100.0(98)
지역별							
대도시	18.2	21.2	6.1	15.2	36.4	3.0	100.0(33)
중소도시	18.9	32.4	8.1	8.1	32.4	0.0	100.0(37)
읍면지역	17.9	32.1	3.6	14.3	28.6	3.6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14.3	11.9	2.4	4.8	66.7	0.0	100.0(42)
공립병설	33.3	11.1	11.1	22.2	22.2	0.0	100.0(9)
사립법인	6.3	50.0	0.0	25.0	12.5	6.3	100.0(16)
사립사인	23.3	46.7	13.3	13.3	0.0	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19.2	11.5	3.8	7.7	57.7	0.0	100.0(52)
사립	17.4	47.8	8.7	17.4	4.3	4.3	100.0(46)



[그림 II-1-6] 회의결과 공지 방법

설립유형별로는 국립과 공립병설은 '회의록 열람하도록 비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각각 100.0%, 33.3%로 나타났으며, 공립단설은 '홈페이지에 탑재'가 66.7%로 가장 높았고, 사립법인과 사립사인은 모두 '가정통신문 배포'가 가장 높아 각각 50.0%, 46.7%를 나타냈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보면 국공립은 '홈페이지에 탑재'가 57.7%, 사립은 '가정통신문 배포'가 47.8%로 높게 나타나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표 II-1-13 참조).

2.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효과 및 개선 요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로는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가장 높은 30.6%로 나타났으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26.5%, '부모의 기관이해도 제고' 20.4%, '지역과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12.2%, '예·결산 공개' 6.1%,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30.3%, 중소도시는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29.7%, 읍면지역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35.7%로 나타났다.

〈표 II-2-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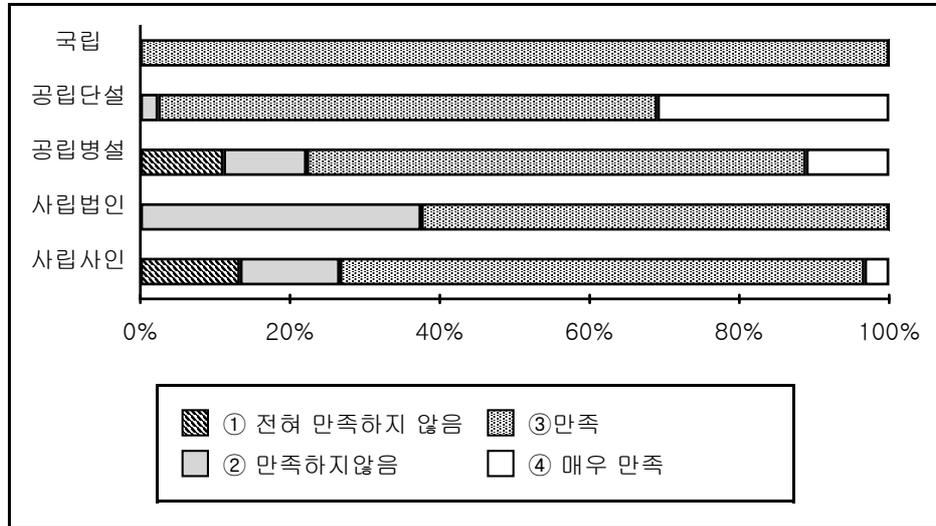
구분	단위: %(명)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부모의 기관이해도 제고	예·결산 공개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지역·유치원 특성 반영한 교육과정운영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기타	사례수
전체	26.5	20.4	6.1	30.6	12.2	3.1	1.0	100.0(98)
지역별								
대도시	30.3	18.2	9.1	30.3	9.1	3.0	0.0	100.0(33)
중소도시	29.7	21.6	5.4	27.0	10.8	2.7	2.7	100.0(37)
읍면지역	17.9	21.4	3.6	35.7	17.9	3.6	0.0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19.0	7.1	11.9	45.2	14.3	2.4	0.0	100.0(42)
공립병설	11.1	11.1	0.0	55.6	11.1	0.0	11.1	100.0(9)
사립법인	31.3	25.0	0.0	31.3	12.5	0.0	0.0	100.0(16)
사립사인	36.7	40.0	3.3	3.3	10.0	6.7	0.0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19.2	7.7	9.6	46.2	13.5	1.9	1.9	100.0(52)
사립	34.8	34.8	2.2	13.0	10.9	4.3	0.0	100.0(46)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100.0%, 공립단설과 공립병설은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각각 45.2%, 55.6%로 가장 높았고, 사립법인인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31.3%, 사립사인은 '부모의 기관이해도 제고'가 40.0%로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보면 국공립은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46.2%, 사립은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부모의 기관 이해도 제고'가 각각 34.8%로 나타났다(표 II-2-1 참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이 67.3%, '매우 만족'이 15.3%, '만족하지 않음'이 12.2%, '전혀 만족하지 않음'이 5.1%로 나타났다. 이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누어보면 '만족(만족+매우만족)'이 82.7%,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이 17.3%로 '만족'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 모두 '만족(만족+매우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81.8%, 81.1%, 85.7%로 나타났고, 세부 설립유형별로도 모두 '만족(만족+매우만족)'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0.0%, 97.6%, 77.8%, 62.5%, 73.3%였다.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보면 '만족(만족+매우만족)'의 비율이 국공립 94.6%와 사립 69.6%로 나타나, 사립유치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II-2-2〉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만족도

구분	단위: %(명)							SD	사례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만족하지 않음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①+② 불만족	③+④ 만족	M (4점 척도)		
전체	5.1	12.2	67.3	15.3	17.3	82.7	2.93	0.69	100.0(98)
지역별									
대도시	9.1	9.1	63.6	18.2	18.2	81.8	2.91	0.80	100.0(33)
중소도시	5.4	13.5	64.9	16.2	18.9	81.1	2.92	0.72	100.0(37)
읍면지역	0.0	14.3	75.0	10.7	14.3	85.7	2.96	0.51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0.0	100.0	0.0	0.0	100.0	3.00	.	100.0(1)
공립단설	0.0	2.4	66.7	31.0	2.4	97.6	3.29	0.51	100.0(42)
공립병설	11.1	11.1	66.7	11.1	22.2	77.8	2.78	0.83	100.0(9)
사립법인	0.0	37.5	62.5	0.0	37.5	62.5	2.63	0.50	100.0(16)
사립사인	13.3	13.3	70.0	3.3	26.7	73.3	2.63	0.76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1.9	3.8	67.3	26.9	5.8	94.2	3.19	0.60	100.0(52)
사립	8.7	21.7	67.4	2.2	30.4	69.6	2.63	0.68	100.0(46)



[그림 II-2-1]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만족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담당인력 업무부담' 20.4%, '형식적인 운영' 15.3%, '학부모 요구사항 조정' 13.3%, '자문기구로써 역할한계' 9.2%, '회의시간 조정' 8.2%, '회의내용 공개 및 정보공유 제한' 6.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도시는 '형식적인 운영'이 27.3%, 중소도시는 '담당인력 업무부담'이 24.3%, 읍면지역은 '운영위원 전문성 부족'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립과 공립병설은 '담당인력 업무부담'이 가장 높아 각각 100.0%, 77.8%였으며, 공립단설은 '운영위원 전문성 부족'이 26.2%, 사립법인은 '운영위원 전문성 부족', '담당인력 업무부담', '형식적인 운영'이 각각 18.8%로 나타났고, 사립사인은 '형식적인 운영'이 26.7%로 가장 높았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보면 국공립은 '담당인력 업무부담'이 26.9%, 사립은 '형식적인 운영'이 23.9%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3〉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운영위원 전문성 부족	회의내용공개 및 정보공유 제한	담당인 력 업무 부담	지문 가구로써 역할한계	형식 적인 운영	회의 시간 조정	학부모 요구사항 조정	기타	사례수
전체	22.4	6.1	20.4	9.2	15.3	8.2	13.3	5.1	100.0(98)
지역별									
대도시	15.2	3.0	18.2	6.1	27.3	12.1	12.1	6.1	100.0(33)
중소도시	21.6	8.1	24.3	8.1	13.5	5.4	16.2	2.7	100.0(37)
읍면지역	32.1	7.1	17.9	14.3	3.6	7.1	10.7	7.1	100.0(28)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1)
공립단설	26.2	0.0	14.3	14.3	9.5	14.3	14.3	7.1	100.0(42)
공립병설	22.2	0.0	77.8	0.0	0.0	0.0	0.0	0.0	100.0(9)
사립법인	18.8	12.5	18.8	12.5	18.8	0.0	12.5	6.3	100.0(16)
사립사인	20.0	13.3	10.0	3.3	26.7	6.7	16.7	3.3	100.0(30)
설립유형									
국공립	25.0	0.0	26.9	11.5	7.7	11.5	11.5	5.8	100.0(52)
사립	19.6	13.0	13.0	6.5	23.9	4.3	15.2	4.3	100.0(46)

〈표 II-2-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우선 개선사항

단위: %(명)

구분	연수기 회 확대	인력 지원	행· 재정적 지원확대	합리적 의사 결정	인센티 브·가산 점 부여	회의시 간 조정	홍보 강화	기 타	사례수
전체	19.0	37.0	15.0	10.0	2.5	1.0	11.0	4.5	100.0(200)
지역별									
대도시	13.2	41.2	14.7	8.8	2.9	1.5	10.3	7.4	100.0(68)
중소도시	17.4	39.1	11.6	13.0	2.9	1.4	11.6	2.9	100.0(69)
읍면지역	27.0	30.2	19.0	7.9	1.6	0.0	11.1	3.2	100.0(63)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2)
공립단설	35.6	20.0	11.1	8.9	6.7	0.0	17.8	0.0	100.0(45)
공립병설	13.2	62.3	11.3	5.7	0.0	1.9	0.0	5.7	100.0(53)
사립법인	18.2	33.3	15.2	6.1	0.0	0.0	18.2	9.1	100.0(33)
사립사인	13.4	28.4	20.9	16.4	3.0	1.5	11.9	4.5	100.0(67)
설립유형									
국공립	23.0	44.0	11.0	7.0	3.0	1.0	8.0	3.0	100.0(100)
사립	15.0	30.0	19.0	13.0	2.0	1.0	14.0	6.0	100.0(100)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인력지원'이 37.0%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수기회 확대'가 19.0%, '행·재정적 지원확대'가 15.0%, '홍보강화'가 11.0%, '합리적 의사결정'이 10.0%, '인센티브·가산점 부여'가 2.5%, '회의시간 조정'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인력지원'이 각각 41.2%, 39.1%, 30.2%로 가장 높았으며,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사인은 '인력지원'이 모두 가장 높아 각각 100.0%, 62.3%, 33.3%, 28.4%였으며, 공립단설은 '연수기회 확대'가 35.6%로 우선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력지원'이 국공립 44.0%, 사립 30.0%로 우선 개선사항으로 나타났다(표 II-2-4 참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운영관련 제안·건의사항'이 36.5%로 가장 높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22.0%, '학부모 경비부담사항'이 13.0%, '유치원 예·결산'이 12.5%, '유치원규칙 제정·개정'과 '연간활동계획'이 동일하게 4.5%, '방과 후 과정 운영'이 3.0%, '원장,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이 0.5% 순이었다.

〈표 II-2-5〉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중요한 안건

단위: %(명)

구분	유치원		교육 과정편 성·운영	학부모 경비부 담사항 ¹⁾	방과후 과정 운영	운영관련 제안 건의사항	연간 활동 계획	원장·초빙 교원관한 사항	기타	사례수
	규칙 제정·개정	유치원 예·결산								
전체	4.5	12.5	22.0	13.0	3.0	36.5	4.5	0.5	35	100.0(200)
설립유형(세부)										
국립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100.0(2)
공립단설	8.9	20.0	24.4	13.3	4.4	28.9	0.0	0.0	0.0	100.0(45)
공립병설	5.7	22.6	22.6	20.8	0.0	18.9	3.8	1.9	3.8	100.0(53)
사립법인	3.0	3.0	21.2	9.1	0.0	45.5	6.1	0.0	12.1	100.0(33)
사립사인	1.5	3.0	20.9	7.5	6.0	52.2	7.5	0.0	1.5	100.0(67)
설립유형										
국공립	7.0	22.0	23.0	18.0	2.0	23.0	2.0	1.0	2.0	100.0(100)
사립	2.0	3.0	21.0	8.0	4.0	50.0	7.0	0.0	5.0	100.0(100)

주: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은 '유치원 예·결산'과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 경비부담사항이 각각 50.0%로 나타났으며, 공립단설과 사립법인, 사립사인은 '운영관련 제안·건의사항'이 각각 28.9%, 45.5%, 52.2%로 높았고, 공립병설은 '유치원 예·결산'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각각 22.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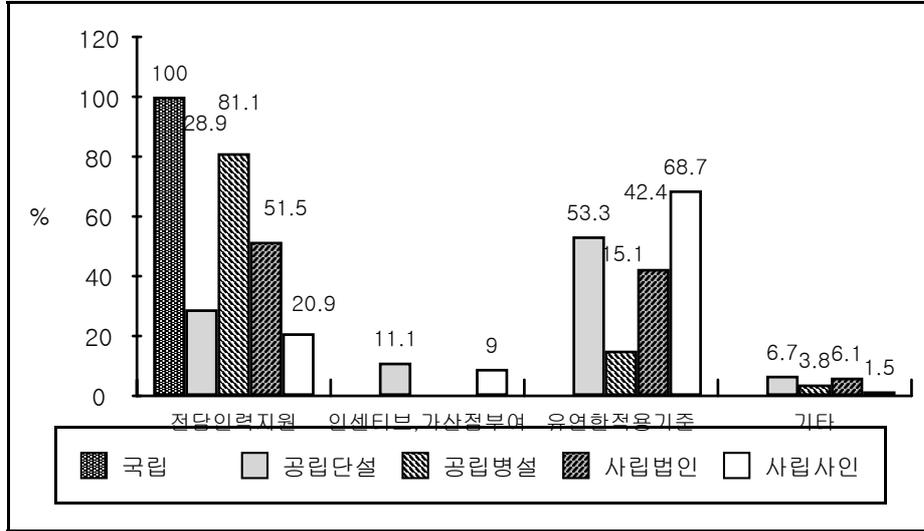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운영관련 제안·건의사항'이 동일한 23.0%로 나타났고, 사립은 '운영관련 제안·건의사항'이 50.0%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예·결산' 관련 사항의 경우, 국공립 30.0%, 사립 3.0%로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하는 주요 안전에 대한 생각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표 II-2-5 참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유연한 적용기준 마련'이 46.0%로 나타났으며, '전담인력 지원'이 44.5%, '운영위원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가 5.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전담인력 지원'이 51.5%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유연한 적용기준 마련'이 각각 50.7%와 46.0%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설립유형별로는 국립, 공립병설, 사립법인인은 동일한 항목인 '전담인력 지원'에 각각 100.0%, 81.1%, 51.5%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공립단설과 사립사인은 '유연한 적용기준 마련'에 각각 53.3%, 68.7%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공립은 '전담인력 지원'에 58.0%, 사립은 '유연한 적용기준 마련'에 60.0%의 응답을 보여 설립유형에 따른 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표 II-2-6〉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명)

구분	전담 인력 지원	운영위원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기타	사례수
전체	44.5	5.5	46.0	4.0	100.0(200)
지역별					
대도시	51.5	4.4	41.2	2.9	100.0(68)
중소도시	40.6	5.8	50.7	2.9	100.0(69)
읍면지역	41.3	6.3	46.0	6.3	100.0(63)
설립유형(세부)					
국립	100.0	0.0	0.0	0.0	100.0(2)
공립단설	28.9	11.1	53.3	6.7	100.0(45)
공립병설	81.1	0.0	15.1	3.8	100.0(53)
사립법인	51.5	0.0	42.4	6.1	100.0(33)
사립사인	20.9	9.0	68.7	1.5	100.0(67)
설립유형					
국공립	58.0	5.0	32.0	5.0	100.0(100)
사립	31.0	6.0	60.0	3.0	100.0(100)



[그림 11-2-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

3. 소결

공사립유치원장(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와 개선요구 사항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인 2012년 10월 기준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비율(51%)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102명)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원구성이 안됨'이 44.1%로 나타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위원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사립유치원은 위원구성이 안되어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원구성,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별 평균 인원수를 살펴본 결과, 교원대표는 2.7

명, 학부모대표는 4.2명, 기타 1.7명으로 나타나 학부모위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달리 유아교육법 제 19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역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아니오'가 52.0%로 나타나 지역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아니오'가 74.5%로 나타나 지역사회위원의 참여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간사로는 '유치원 교원'이 66.3%, '행정실 직원'이 30.6%로 나타나 '유치원 교원'이 간사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아 유치원운영위원회로 인한 교원의 추가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방식과 회의개최 방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교원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42.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가 43.9%로 가장 높았다. 국공립유치원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유치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학부모위원의 선출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과 제22조의12제4항에 따라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선출절차를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의 항목에 응답한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최 방식으로는 '학기별 1회'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주중 주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 등 '주중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융통적인 회의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2. 8.31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제3항은 회의 개최 시간을 '일과 후, 주말 등 위원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 참여가 쉬울 것으로 보이나,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 규칙으로 회의 개최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중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융통적인 회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주로 수행하는 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사항'이 90.8%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유치원 급식소위원회'가 39.8%로 나타나 가장 많이 구성된 상황이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소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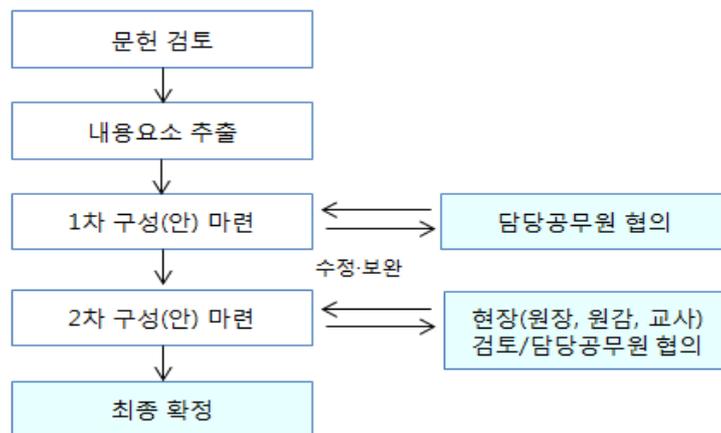
다음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효과와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로는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가장 높은 30.6%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만족+매우만족)'이 82.7%, '불만족(전혀 만족하지 않음+만족하지 않음)'이 17.3%로 '만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이 22.4%로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우선 개선사항으로는 '인력지원'이 37.0%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Ⅲ.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 개발

본 장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한 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1. 매뉴얼 개발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의 원장, 원감, 교사,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구성, 기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본 매뉴얼은 관련 자료(보도자료, 법규, 선행연구 등)를 토대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개념과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길잡이’를 토대로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적합한 내용을 추출하여 구성안을 마련하였고, 담당공무원과 현장전문가(원장, 원감, 교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의 개발 절차는 [그림 Ⅲ-1-1] 와 같다.



[그림 Ⅲ-1-1] 매뉴얼 개발 절차

2. 매뉴얼 구성 및 내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매뉴얼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토대로 유치원운영위원회 보도자료, 관련 선행연구⁴⁾들을 검토하여 매뉴얼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내용을 매뉴얼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 2인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고, 공사립유치원장, 원감, 교사 각 2인, 총 6명의 검토를 받아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매뉴얼 구성 목차(안)을 가지고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한 결과를 <표 III-2-1>에 제시하였다.

<표 III-2-1> 매뉴얼 구성 및 내용

매뉴얼 구성 목차(안)	수정할 사항	추가할 사항
I.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해 1.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개념 2.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3.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비교		·공립과 사립 해당 항목 눈에 띄게 ·지역위원 필요/불필요 규정 확실
II.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3. 유치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위원정수기준 많다 (100이상:9~11X⇒150명 이상부터9~11명이면적당) ·4/1일 선출 부적당, 전년도 말에 선출하는 것이 좋겠음.	·선출 전 부모교육 필요(내용) ·운영위원장 임기, 자격, 결격사유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각종양식(공고문안, 위촉장, 서류작성 예시안, 가정통신문 등)
III.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1.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유치원의 예·결산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월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방과 후 과정 운영 6. 초빙교원의 추천 7. 유치원급식 8.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예시)	·체험활동 중 '숙박'은 유치원과 맞지 않음.	·회의 안건의 다양한 예시 ·예산내역표(국가 지원 보조금 -예: 기자재구매내역)

4)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선행연구들이 부재하여 대부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연구들을 참조함.

(표 III-2-1 계속)

매뉴얼 구성 목차(안)	수정할 사항	추가할 사항
IV.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2. 안건 제안과 회의 준비 3. 회의 진행 절차		·회의진행방법 ·회의개최 가능한 참석률(%) ·회의예시안, 절차
V.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문고 답하기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매뉴얼 구성(안)을 가지고 수정할 사항과 추가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정할 사항으로 위원정수에 대한 기준이 많다는 의견과 위원선출 시기에 대한 수정 요청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한 내용은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Contents

-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 6
 -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7
 - 3. 국립·공립 및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비교 ... 8
 - 5. 방과 후과정 운영 ... 51
 - 6. 유치원급의 ... 54
 -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60
 -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인활동계획(예시) ... 62
-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12
 -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 ... 15
 -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27
-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1. 유치원 규칙의 개정 ... 33
 - 2. 유치원의 예·결산 ... 36
 -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5
 - 4. 원복·졸업앨범·세월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48
- 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1.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 66
 - 2. 안건 제안과 회의 준비 ... 68
 - 3. 회의 진행 절차 ... 74
- 5*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문고 답하기**
 -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85
 -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86
 -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 96
 -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100

[그림 III-2-1] 매뉴얼 구성 및 내용

추가할 사항에 관해서는 국공립과 사립의 법적 성격이 상이⁵⁾하므로 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의진행에 필요한 각종 양식과 예시(안)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매뉴얼에 담았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매뉴얼의 목차는 [그림 Ⅲ-2-1]과 같다.

3. 매뉴얼 활용 방안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매뉴얼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은 인쇄용 파일과 웹용 파일 두 가지의 형태로 개발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하거나 웹사이트에 제공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자료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참여인력들에게 실질적인 지침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5) 국공립유치원은 심의기구, 사립유치원은 자문기구임.

IV.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공적인 안착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1.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본 연구의 조사 시점인 2012년 10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원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사립유치원은 위원구성이 안되어 운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시도별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조례가 11월 중 통과 예정으로 지침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에 나타난 결과로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보다 명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립별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 다양한 소위원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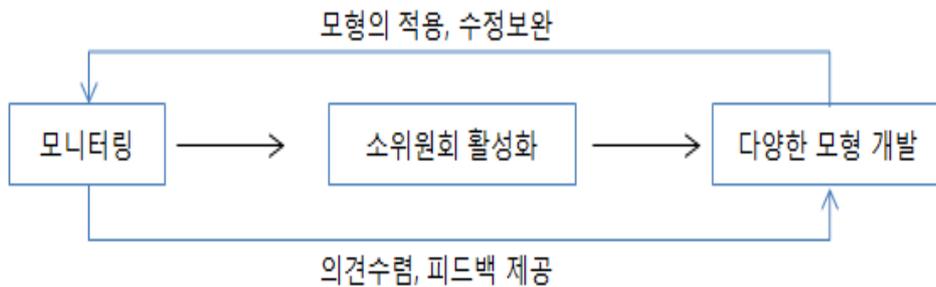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일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건의 사항'이 가장 높았고, '유치원 급식소위원회'가 가장 많이 구성된 상황으로 나타나 아직은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해당학교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하여 정기회의

때 전체 운영위원회에 각 소위원회 의장이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위원회가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받으며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과 설명을 하기도 한다(신상명, 2000).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소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문적인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여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모델 개발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유연한 적용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도입단계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치원과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독립적인 운영 방안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다양한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운영 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공유하고, 모형 적용을 통해 현장에 안착 가능한 형태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추진 방안을 하나의 과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1]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2.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가. 지역사회인사 참여기회 확대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지역사회위원의 참여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의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참여인력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년 개정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2012년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가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주체들에게 특정 조치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김성열, 2001)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지역사회를 포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참여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위원을 포함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치원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촉진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지역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의 인사를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나. 참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과 역할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관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연수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새로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은 재임 중 6개월 이내에(약 18시간) 3일 동안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6개의 필수과목(12시간)을 이수하고, 교육청에서 승인한 3과목을 선택 이수해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 선행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인력이 전문성 확대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적합한 의식과 역할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의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하고, 의무 이수과정과 선택 이수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연수과정을 위한 교육 자료와 기관의 자체 연수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 교원위원의 업무 경감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간사직은 행정실 직원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으나 본 연구 결과, 유치원은 '유치원 교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 간사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원의 추가업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우선 개선사항으로 '인력지원'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위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인력지원도 필요하지만 인센티브와 가산 점 제도 등을 활용하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치원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참여인력의 적극적인 활동이 핵심적인 요건이므로 재정 소요와 인력 규모를 파악하여 교원위원의 추가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 매뉴얼 개발, 사례 공유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방식은 국공립유치원의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사립유치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구결과, 선출절차를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외의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면담조사 결과에서도 매뉴얼에 회의절차와 양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매뉴얼의 구성 요소를 선정하

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의 수정과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에 의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자격이나 경험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치원의 다양한 특성에 근거한 세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마.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와 홍보 방안 마련

본 연구의 조사결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최 방식으로는 '학기별 1회'가 가장 높았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간은 '주중 주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부부 등 '주중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융통적인 회의시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에 의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여 부모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회의시간의 융통적인 조정과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효과로는 '기관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만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만족도를 고려하지 못하였음에도 참여인력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이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참여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 12. 8).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 마련-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 선정·추진-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2). 유치원 경영 개선을 위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내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2. 3. 20). 유치원 교육, 100년만에 확 달라진다 !
- 김병주(2005).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향 탐색. 초등교육연구, 18(2), 195-219.
- 김병찬(2007).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명과 암-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 사례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5(4), 185-214.
- 김성열(2001). 학교교육의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도입과정, 활성화. 교육인류학연구, 4(2), 71-129.
- 김성열(2006).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제화의 성과와 전망. 교육법학연구, 18(1), 45-70.
- 김성열·공동배(2007).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성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163-184.
- 김은영·최은영·조혜주(2011). 2011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나정·유희정·박은실(2002).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교육인적자원부.
- 박상완(2007).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간 의사소통 특성 분석. 교육과학연구, 38(1), 23-49.
- 박찬언(2009). 학교장의 리더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교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철민(2012).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의사 결정요인 탐색연구 : 경기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기창(2011). 유아교육 재정의 쟁점과 과제. 유아교육연구, 31(1), 43-59.

- 서정화(2005).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 방안 연구. *교육연구논총*, 22, 89-115.
- 신상명(2007).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능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유경선(2011).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이제 거수기는 가라!. *우리 교육*, 12, 96-111.
- 정수현·박상완·김민조(2008).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 *초등교육연구*, 21(1), 225-249.
- 정수현·박상완(2005).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성과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3(2), 303-328.

Abstract

A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Kindergarten Council

Eun-Young Choi Hye-Joo Cho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condition and problems of Kindergarten Council. The study conducted online questionnaires, distributing 200 directors of kindergartens across the country. The questionnaires were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kindergarten Council.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so as to analyze frequency test with SPSS 20.0 for Window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suggest for the promotion of the Kindergarten Council as follow: (1) ongoing support for monitoring; (2) enable the various subcommittees; and (3) development of a variety of models that reflect the region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lso, Policy sugges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kindergarten Council: (1) expanding community members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rough a wide range of opinion; (2) expanded training for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staffing participation; (3) the relief work of the faculty committee; (4) supporting through the manual and case sharing; (5) expanding the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of parents.

부 록

부록 1.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부록 2. 설문지

부록 3.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부록 1.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유아교육법	<p>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p> <p>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절차를 통하여 원장을 선발하는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p> <p>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p> <p>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3.21]</p> <p>[시행일:2013.3.1] 제19조의3의 개정규정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관한 부분</p> <p>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p>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p> <p>[본조신설 2012.3.21]</p> <p>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중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② 사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p>
-------	---

유아 교육 법 시 행 령	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 등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22조의12(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시·도의 조례"는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본다.

⑤ 사립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8.31]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본조신설 2012.8.31]

부록 2. 설문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일련번호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9월부터 시행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감)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책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사항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조사관련 문의: 최은영(02-398-7782, eyny@kicce.re.kr)

조혜주(02-398-7715, thgid@kicce.re.kr)

응 답 자	소속기관:
	연락처:
	* 소속기관과 연락처는 설문 응답자 구분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육 아 정 책 연 구 소

9.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습니까?

- 1)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추천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
- 2) 전체회의에서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 투표
- 3) 원장의 지명에 의해 거수로 투표
- 4) 본인 희망에 의해 거수로 투표
- 5) 기타()

10.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최는 몇 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 1) 분기별 1회
- 2) 학기별 1회
- 3) 1년에 1회
- 4) 의제가 있을 때마다
- 5) 기타()

1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주로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주중 주간
- 2) 주중 야간
- 3) 주말 및 공휴일
- 4) 기타()

12.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시)

- 1)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유치원의 예·결산
-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5) 방과 후 과정 운영
- 6) 유치원 급식
-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
- 9) 기타()

1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공시되고 있습니까?

- 1) 회의록 열람하도록 비치
- 2) 가정통신문 배포
- 3) 공개하지 않음
- 4) 요구가 있을 시 공개
- 5) 기타()

14.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 2) 부모의 기관 이해도 제고
- 3)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
- 4) 기관 운영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
- 5) 지역 및 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 6) 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 7) 기타()

15.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만족하십니까?

- 1) 전혀 만족하지 않음
- 2) 만족하지 않음
- 3) 만족하는 편임
- 4) 매우 만족함

16.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1) 운영위원의 전문성 부족
- 2) 회의내용 공개 및 정보 공유의 제한
- 3) 위원회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 4) 자문기구로써 역할의 한계
- 5) 형식적인 운영
- 6) 회의 시간 조정
- 7) 기타()

*** 다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17. 향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정착시키는데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 2)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지원
- 3) 행·재정적 지원 확대
- 4) 합리적 의사 결정을 통한 의결
- 5) 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가산점 부여
- 6) 회의시간 조정(일과시간 외 주말, 공휴일 활용)

- 7) 유치원운영위원회에의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 8) 기타()

18.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유치원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유치원의 예·결산
-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5) 방과 후 과정 운영
- 6) 유치원 급식
-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
- 9) 기타()

19.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담 인력 지원
- 2) 유치원운영위원 인센티브 혹은 가산점 부여
- 3) 설립유형에 따른 유연한 적용 기준 마련
- 4) 기타()

20.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부록 3.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Contents

1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 6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7
3. 국립·공립 및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비교 ... 8

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 12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 15
3. 유치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 27

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1. 유치원 규칙의 개정 ... 33
2. 유치원의 예·결산 ... 36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45
4.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48



- 5. 방과 후 과정 운영 ... 51
- 6. 유치원급식 ... 54
-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60
-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예시) ... 62

4*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1.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 66
- 2. 안건 제안과 회의 준비 ... 68
- 3. 회의 진행 절차 ... 74

5*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문고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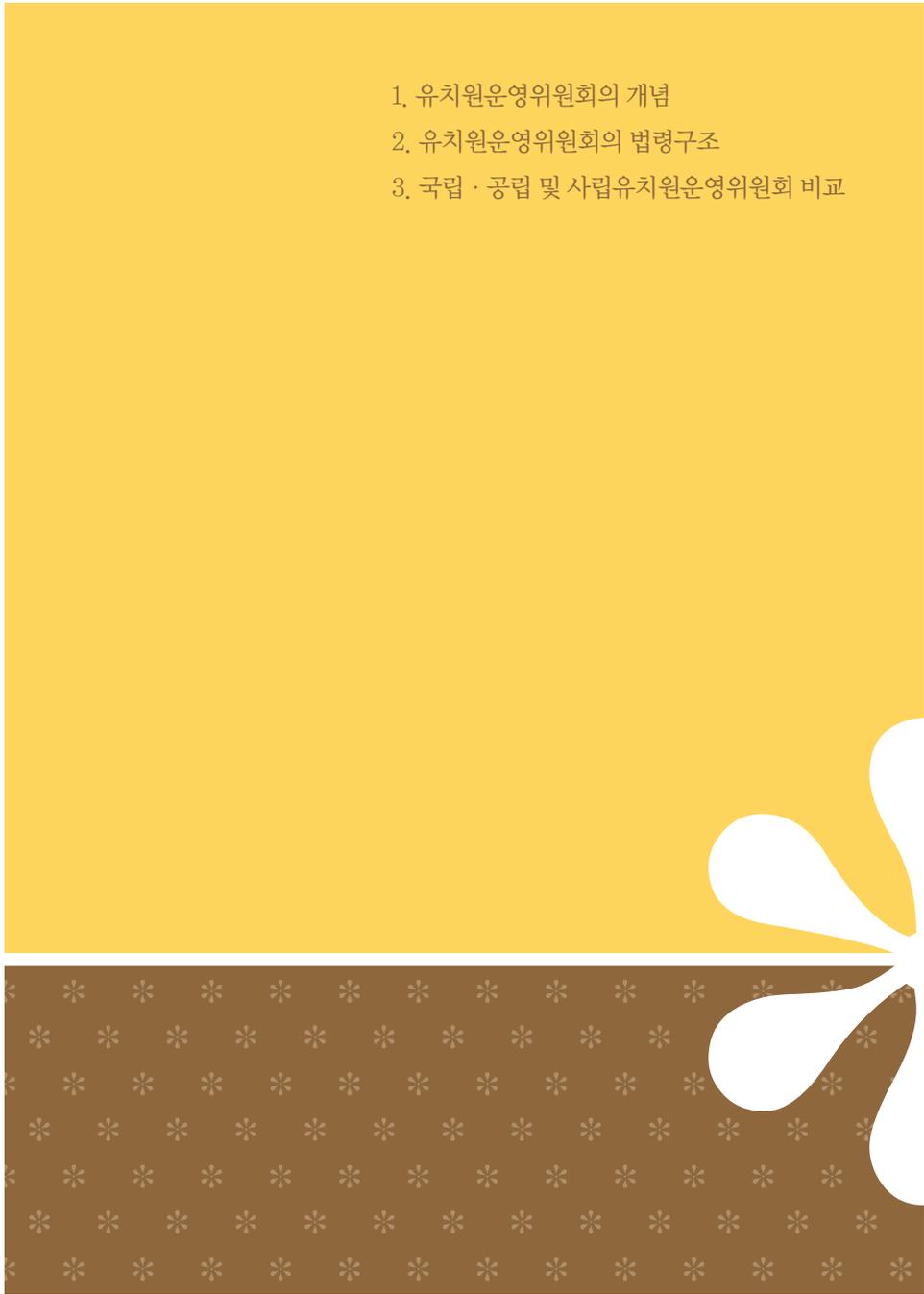
-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85
-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86
-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 96
-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100

1*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이해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3. 국립·공립 및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비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임.

도입배경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유아교육 선진화」를 추진함.
-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성격

-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 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법정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자문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립·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유아교육법 | 제19조의3 ~ 제19조의6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 제22조의2 ~ 제22조의12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위원의 선출 방법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자문결과에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유치원 규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유치원 회계 관리 등

각 시·도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시립유치원 정관

- 유치원 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자문 사항, 회의 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절차
- 기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

국립·공립 및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비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심의기구	자문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13.3.1시행 예정)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13.3.1 시행 예정)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방과 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의5)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p>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유치원의 기능과 같음</p> <p>제외되는 자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선출 방법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12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공립유치원과 같음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유치원의 장이 위촉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1 **심의기관**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유치원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인 논의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관
- 2 **자문기관** 유치원장의 요청에 응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유치원장의 의사결정에 참고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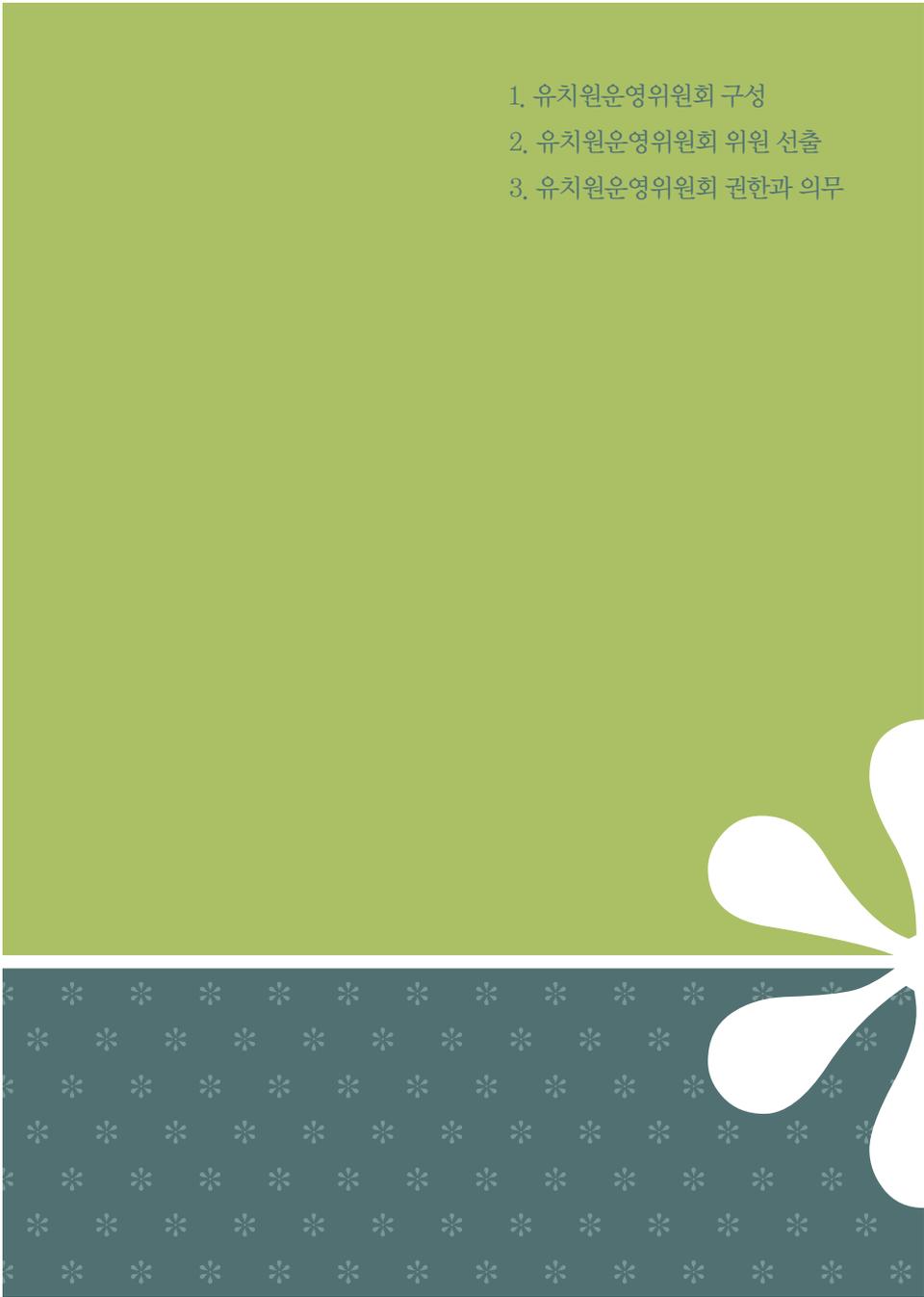


2*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3. 유치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이며,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 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진.
-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함.

◆ 소위원회

- 안전에 대한 사전 조사, 자료수집, 검토 등을 통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안전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함.

◆ 간사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자문,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원아 수	위원 수
100명 미만	5~8명
100명 이상	9~11명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구분	유치원
학부모 위원	60%~70%
교원위원	30%~40%

-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

-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 4항).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 제6항).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소위원회의 개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안전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임.

◆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1항

-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함.
- 필요 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함.

◆ 소위원회의 종류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

-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예: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방과 후 과정소위원회 등)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중요분야에 관한 안전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임.

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

- 안전 접수 후 본회의 전에 위원장이 구성여부 및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함.
-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 선출함.

◆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전 처리

-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전 심의를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이므로 본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
- 소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본회의의 내용이나 결정사항을 대신할 수 없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격 상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5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5항

국립·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시·도의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에서 정함.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함.
- 투표 방법에는 직접투표, 전자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의 병행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유치원 사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직접투표가 원칙임.
- 다만,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함(이 경우 당해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 저조 등은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1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유형이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약시키고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러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위원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선거 홍보가 필요함.

2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한 선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 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반송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이를 회수하여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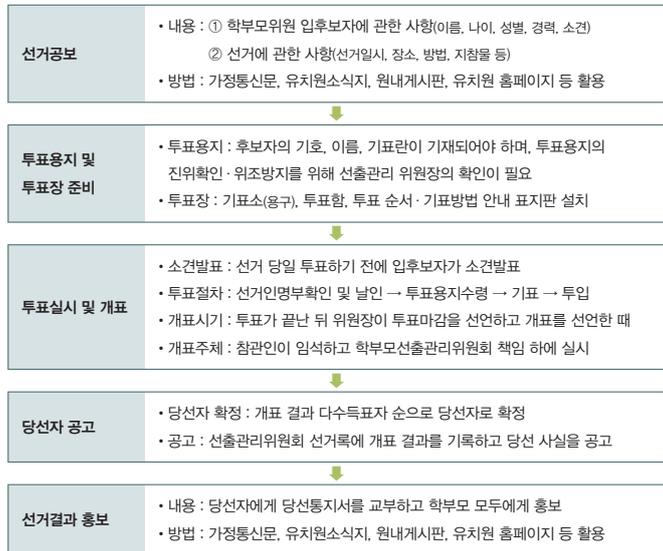
3 전자투표에 의한 선출 인터넷 전자선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상으로 투표 및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함.



선출 절차

◆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





2 유차원운영위원회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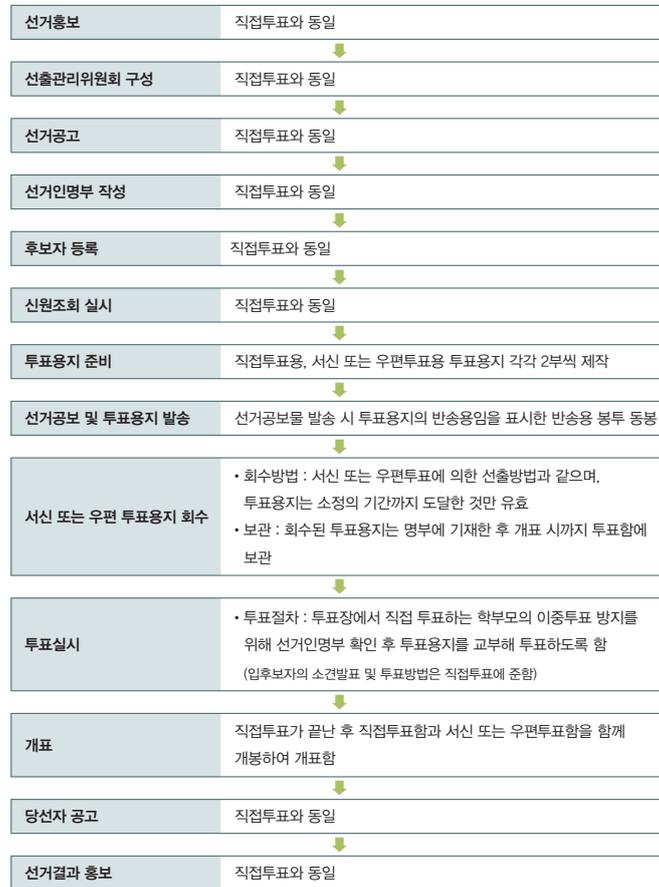
◆ 서신 또는 우편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 직접투표가 어려울 경우 가정통신문을 활용하여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와 투표용지를 발송하면, 학부모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발송하고, 선거일에 개표하여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임.
- 선출절차는 투표용지 발송과 회수의 과정을 제외하고는 직접투표 방법에 준함.



◆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여 선출하는 경우

-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해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법.
- 선거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학부모의 투표 참여율을 높여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선출방법임.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

- 유치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음(이 경우 당해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유치원 단위의 학부모회의에서 학급별 대표를 선출한 후, 이들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유형임.



◆ 전자투표에 의한 선출

- 투표 및 개표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인터넷 전자선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유치원의 경우 도입하면 효과적인 유형임.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교원위원의 선출 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유치원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당해 유치원 교원의 대표자임.

특히 교원위원은 개인이나 집단이익의 대변자로서가 아니라 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교직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에 반영하고,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결고리의 위치에 있음. 따라서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유치원운영 전체를 보는 안목과 균형 감각이 검토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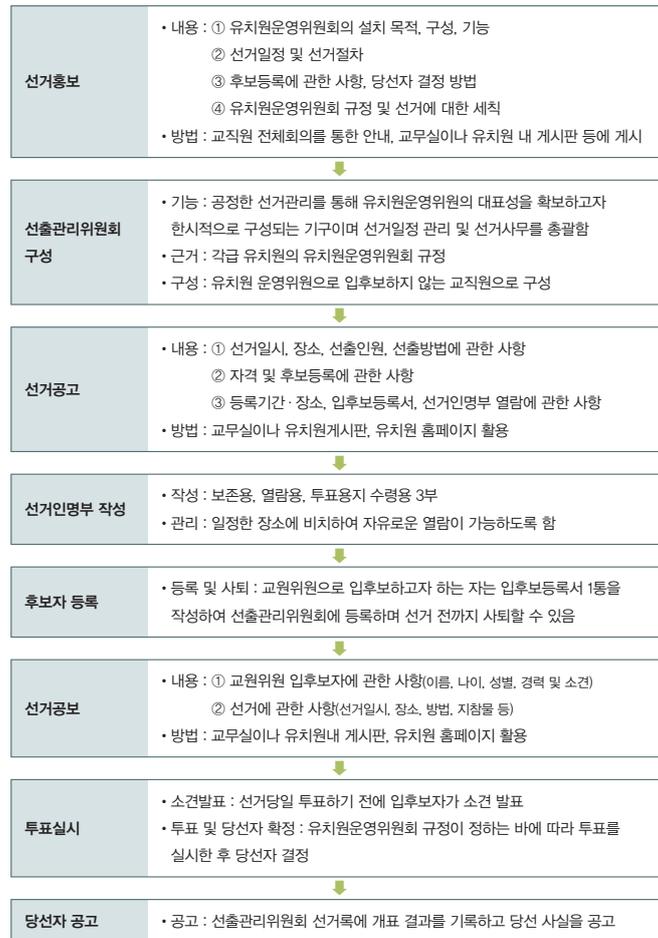
◆ 국립·공립유치원

-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함.

◆ 사립유치원

- 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유치원 규칙 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함.
- 선출절차는 국립·공립유치원을 참고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의 추천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선출 절차 | 국·공립 유치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하며, 구체적 선출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

* 잘못된 위원 선출 사례

선거홍보 및 선출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 **선거홍보 관련** 일반 학부모에게 위원선출에 대한 통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통지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위원선출에 관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홍보를 하는 경우

운영위원 수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 **구성 비율**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진 유치원 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유치원에서 임의로 교원위원의 수는 늘리고 학부모위원의 수는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국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 및 제22조의12 제6항).

규정에 근거 없이 운영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정교사의 교원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운영위원 자격에 성별, 연령별, 경력별 제한을 두는 경우

- **학부모위원** 유치원 내 임의단체 구성원인 학부모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후보할 수 있게 하거나 임의단체의 회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권한과 의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

◆ 유치원 운영 참여권

- 유치원운영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유치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즉, 유치원운영위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들의 참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대표라는 공적(公的) 지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 유치원운영위원들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음.
- 위원들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표결 과정을 통해 유치원 운영을 민주화하고 유치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음.

◆ 보고 요구권

-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유치원운영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



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음.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세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발전을 위해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유치원교육에 대한 애정과 이해로 적극적 참여와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
- 유치원운영위원은 유치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 학부모위원 :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 교원위원 : 교직원들이 바라는 유치원운영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
-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각자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상호 이해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원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유치원 운영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및 운영진반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먼저 해야 할 일

◆ 유치원 구석구석 돌아보기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실, 화장실, 방과 후 교실 등 유치원 시설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임.

◆ 유치원운영위원회끼리 미리 만나보기

-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위원을 만나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음.
- 유치원에 대한 정보 교환, 앞으로의 유치원 발전 방향을 논의함.



-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과 관련 법령 알아보기**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도의 조례 및 유치원별로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을 알아두기
- ◆ **유치원의 규칙 알아보기**
 - 유치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유치원의 규칙에 대해서 모른다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규칙이나 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함.
- ◆ **유치원 교육계획서와 월별 안전 챙기기**
 - 유치원 교육계획서를 꼼꼼히 보면서 월별로 어떤 안전을 심의·자문해야 하는지, 어떤 제안을 해야 하는지 챙겨보기
- ◆ **유치원 발전 계획서 만들기**
 - 우리 유치원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하므로 학부모들과 함께 논의하여 유치원발전 계획서를 만들어보기
- ◆ **다른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 만나기**
 -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교육문제는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발전시켜 운영위원 지역협의회를 만들어 참여하기
- ◆ **도움 받을 곳 알아보기**
 - 유치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됨. 미리 소속교육청의 상담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알아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됨.
- ◆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기**
 - 최근 교육계의 동향, 유아기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원아들의 관심사 등

3*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유치원 규칙의 개정
2. 유치원의 예·결산
3. 유치원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방과 후 과정 운영
6. 유치원급식
7.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8.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활동계획(예시)



심의(자문)사항

유아교육법 | 제19조의4(기능)

-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2013.3.1 시행 예정)
 -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해당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2013.3.1 시행 예정)
 -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해당 없음
-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의한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

유치원 규칙의 개정

유치원 규칙

◆ 유치원 규칙의 개념

- 유치원 규칙은 단위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하며, 유치원은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활동을 함.
- 유치원 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 또는 개정되면 유치원은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음.

유치원 규칙의 주요 내용

-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 학급편제 및 정원
- 교육 내용
-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
-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추진 절차(예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절차	추진내용	세부추진내용
① 심의·자문 전	유치원 구성원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전수 및 표본조사 실시
	1차 시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토론회, 공청회 개최 (유치원 실정에 따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2차 시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② 심의·자문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시안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은 후 최종 확정
③ 심의·자문 후	인가 요청 및 정보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 요청 • 홈페이지 탑재 또는 가정통신문 발송
	유치원 규칙 안내 및 연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구성원의 유치원 규칙 준수 서약식 • 유치원구성원을 위한 유치원 규칙 안내 연수 실시
	적용 및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유치원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분석

- ① 심의·자문 전 | 유치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 설문 등 유치원 구성원(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수렴함.
- ② 심의·자문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유치원 운영위원장이 수립 경과, 주요내용에 대해 운영위원들에게 설명함.
 - 의견 반영절차 및 공정성, 내용의 실효성 등을 심의·자문하고, 유치원장에게 결과통보
- ③ 심의·자문 후 | 유치원 규칙 최종 확정 및 공시
 - 유치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유치원 규칙의 내용의 실효성

- 원아·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원아·학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자문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제10조 | 유치원 규칙

-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시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 등

법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 2 학급편제 및 정원
- 3 교육내용
-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 7 유치원 규칙의 개정절차
- 8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의 예·결산

유치원회계 예·결산의 기본 개념

- 유치원회계 예산은 유치원이 해당 회계연도 동안 교육과정 운영 등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로 표시한 체계적인 계획서임.
- 국립 유치원의 예·결산은 초등학교 예·결산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전환하여 유치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가 공개됨으로써 재정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임.
- 공립 유치원의 예·결산은 시·도의 교육규칙을 적용함.
- 사립유치원의 예·결산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2013년 적용예정) 적용 전까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함.

유치원회계 예산의 이해

◆ 예산의 의미

- 예산은 1년간의 단위유치원 수입·지출의 예정표이며 유치원의 교육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

- 유치원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단위유치원 운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이 필요함.
- 예산 편성 및 심의·자문 과정에서 유치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 수렴과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자문이 보장되어야 함.
-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직접교육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경비는 필요한 적정 수준에서 편성함.
- 유치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집행결과는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유치원경영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예산의 구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구분	구조	종류	
세입	장관항목	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자체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 등 교육비용 · 수업료 등 교육비용 외 그 밖의 납부금 · 사용료 및 수수료 · 물품매각대금 	
		기타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금 · 그 밖의 수입 	
세출	사업별	정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운영 및 시설·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 	
		단위사업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한 예비비 등 	
	성질별	목그룹 /목/세목 원가통계 비품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및 기타		

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예산 편성 절차(예시)

◆ 예산의 편성

과정	주체	법정기한	추진사항
유치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11월30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의 교육재정여건 및 운영방향 제시 권장사업 포함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 등 예산운영에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
↓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유치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입예산의 규모 추정 유치원구성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유치원교육계획서와 연계한 교육과정운영 및 유치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소요액 등 기록 개인별 예산요구서를 부서로 제출 부서 접수 후 부서별 예산요구서를 행정실에 제출
↓			
연간 총전입금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1월9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의 총 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목적사업의 경우 대상유치원이 지정되는 대로 확정·통보
↓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유치원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유치원의 총 세입규모 확정 부별 또는 전체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
↓			
예산안 제출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1월29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 - 유치원장은 예산안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도 전입금 규모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화 등으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정예산안 제출 가능

※ 법정기한의 날짜는 2. 28. 기준

◆ 예산안 심의(자문) 및 확정

과정	주체	법정기한	추진사항
예산안 통지	유치원 운영 위원장	회의개최 7일 전까지	• 유치원운영위원들에게 예산안 통지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필요시)	유치원 운영 위원장	-	•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필요시 자율적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
유치원장 제안 설명 및 관계자 의견 청취	유치원 운영 위원장	-	• 유치원의 교육시책 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유치원장 제안 설명 •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 청취 • 소위원회 구성 시 소위원회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예산안 심의·자문 결과 송부	유치원 운영 위원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2월23일 까지 심의·자문)	• 유치원장에게 심의·자문결과 통지
예산 확정	유치원장		• 유치원장이 유치원회계 세입·세출예산 확정
예산 공개 예산 보고	유치원장		• 유치원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예산 공개 • 교육청에 예산 보고

※ 법정기한의 날짜는 2. 28. 기준

* 유치원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간

- 1 회계연도는 유치원의 학년도와 일치하여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임(유아교육법 제19조의8).
- 2 유치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해당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계상하여 편성되었는지 심의·자문
- 예산편성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심의·자문
 - 전체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 및 교육적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 교직원회의 등 충분한 검토 및 우선순위 확정
- 예산안이 유치원 교육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검토
-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준수 여부
 -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필요경비가 반영되었는지 검토
-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교육비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시급한 유치원 현안 해결에 필요한 재원 등이 반영되었는지 심의·자문
 - 바람직한 예산은 직접교육비를 최대한 계상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 간접교육비는 최소한의 소요액만 계상
- 유치원 자체 인력고용에 있어서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
- 업무추진비, 예비비의 계상이 적정한지 심의·자문

예산의 집행

◆ 예산 미확정 시 준예산 집행

-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함.
 - 교직원 등의 인건비,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유치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명사이월 등)
-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성립 전 예산집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



는 수익자부담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함.

- 다만, 회계연도 말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목적사업비 전입금 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명시이월 포함)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가 가능함.

◆ 예산의 이·전용 등

예산의 이용

- 세출예산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다만, 미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경우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이 가능함.

예산의 전용

- 유치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산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한 동일한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목, 동일한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간 목의 금액은 전용이 가능함.
-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지출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
 - 정산재원(목적사업비, 보조금 및 지원금, 다른 유치원 전입금, 수익자부담교육비 등) 및 이월액은 이·전용할 수 없다.



유치원회계 결산의 이해

◆ 결산의 의미

- 결산 : 1년 동안 유치원 수입·지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임.

◆ 결산의 기본방향

-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위유치원 재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정임.
- 결산내역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등의 자료로 활용함.

◆ 결산과 예산은 일반적으로 불일치

- 결산의 의미 : 단위유치원 예산과 결산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명확히 함.

* 예산과 결산의 불일치 사유

- 1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로부터 이월액 발생
- 2 당해 연도의 불용액 발생
- 3 정세나 사정의 변동으로 예산 이용 및 전용 발생
- 4 목적경비·지원비·기부금 그리고 수익자부담 교육비 수입에 변동이 있는 경우



결산 심의·자문 절차(예시)

과정	법정기한	추진사항
회계연도 종료	매년 2월 말일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출납폐쇄정리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3월20일)	· 당해 회계연도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결산서 작성	-	· 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예산의 이·전용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4월 말일 까지)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
결산심의·자문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6월 말일까지)	· 유치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통지 · 유치원장이 결산 내용 설명 ·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
결산심의·자문 결과통보	-	· 유치원운영위원회 결산심의·자문 결과를 유치원장에게 통보
결산 공개 결산 보고	-	· 유치원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에 결산 공개 · 교육청에 결산 보고



유치원운영위원회 결산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세입은 당초 예산서상의 세입액과 비교하여 예정대로 확보되었는지 여부
- 유치원 자체재정 확보 여부(시설물 사용료, 수수료와 이자수입 증대 등)
- 과년도 수입의 종류와 발생원인
- 예산집행 시 사업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의 예산낭비 여부
- 교육적 효과가 불투명한 시설투자나 전시적인 부분에 예산낭비 여부
- 예산의 이·전용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활동에 대한 예산의 우선 지출 등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 사용 여부
-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에 예비비 집행 여부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그로 인해 단위유치원 교육목표 달성 지원에 차질이 없었는지 여부
- 예산집행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올릴 수 있었는지 여부
- 예산의 이월이 있었을 경우 그 사유

관련 법령내용

- ◆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 유치원회계의 설치**
 - 국립·공립의 유치원에 유치원 회계를 설치함.
- ◆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 유치원회계의 운영**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까지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자문하여야 함.
 -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목적

- 지역 및 유치원의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등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경영을 통해 원아들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바른 인성을 지닌 창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이해

-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념** 유치원 교육과정은 그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원아에게 책임 지고 실현하여야 하는 당해 유치원의 교육 설계도이며, 상세한 교육운영 세부 실천 계획임.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치원 교육과정은 해당 유치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반영되고, 교육 내용·방법과 운영 방식이 각 유치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편성·운영되어야 함.
 - 유치원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해 유치원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됨. 따라서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치원을 경영하는 유치원장의 교육적인 판단과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따라 창의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교육과정 편성표 시안을 교육청에 제출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게 됨.



교육과정 심의·자문 절차(예시)

- ① 심의·자문 전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표 및 시간배당표 제출
- 교육과정 검토 분석 및 편성·운영을 위한 기초 조사, 유치원교육과정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과정 편성표 시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출함.
- ② 심의·자문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심의·자문
-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자문함.

* 주요 심의·자문 사항

- 1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표
- 2 연령별, 학기별 편성의 적절성
- 3 견학, 체험활동 내용

- ③ 심의·자문 후 | 심의·자문된 교육과정의 최종 확정
-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교육계획서를 작성, 교육과정 중심의 유치원 운영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함.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의 실천을 지속 확인함.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공통

- 국가 수준 및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준수 여부
 - ※ 수업일수 180일 이상 확보 여부(10% 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
- 지역, 유치원의 특수성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여부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법령

- 유아교육법(제13조)
 -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3호)
-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원복·졸업앨범·체험활동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원복 및 체육복 선정에 관한 사항

◆ 목적

- 유아들의 원복이나 체육복의 모양·색상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담의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 원복 및 체육복의 선정 또는 변경 등의 과정에서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 추진 절차 | 예시

① 심의·자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원복·체육복 선정위원회) • 2개 이상의 원복·체육복 선정 안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의안 제출
↓	
② 심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모양·재질 등의 적정여부를 심의·자문(원아생활지도, 부모부담 고려) • 구입방법 등 원복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자문 가능 • 선정 안 미흡 판단 시 수정안 발의하여 심의·자문가능
↓	
③ 심의·자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은 심의·자문결과를 유아 및 학부모에게 공개(통지) • 학부모는 개별 또는 공동 구입여부 결정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반드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선정 안이 결정되었는지 고려하여 심의·자문
- 원아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인 판단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의·자문
- 원복·체육복 선정 이해관계자(제조사, 대리점 관계자 등)는 유치원 운영위원이라도 원복·체육복 선정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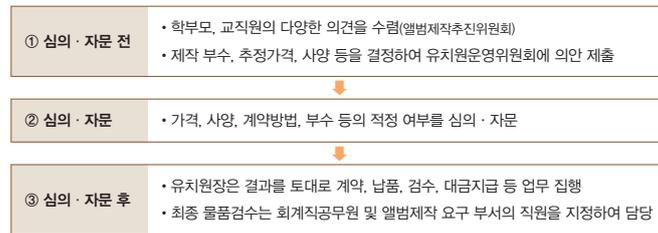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

◆ 목적

졸업앨범 제작에 부담의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졸업앨범 제작 과정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졸업앨범 제작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추진 절차 | 예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반드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선정 안이 결정되었는지 심의·자문시 고려
- 심의·자문은 앨범의 사양, 가격, 계약방법 등의 적정 여부
- 원아의 전출입 등에 의한 앨범 구매 수량 변동 시 증감 조정이 가능한지를 고려
- 유치원 운영위원 중 졸업앨범 제작 이해 관계자는 졸업앨범 제작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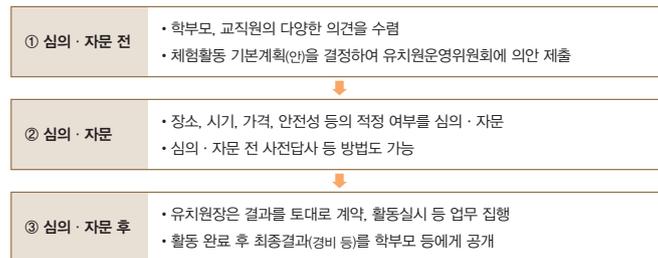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 목적

체험활동 및 체험활동지 선정 등에 대하여 부담의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소 선정과정 등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추진 절차 | 예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체험활동 심의·자문시기를 앞당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함.
- 숙박인 경우 숙박업체의 시설의 안전성, 높은 서비스,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 등을 심도 있게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미리 결정
-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 및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였는지 심의·자문
- 실무담당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자문 시 활용하며, 전년도 체험활동 및 체험활동의 평가결과를 반영
- 미 실시에 따른 대체프로그램 및 불참 유아에 대한 교육계획 마련 여부도 심의·자문 시 확인

방과 후 과정 운영

방과 후 과정의 개념

- 방과 후 과정은 교육수요자(원아,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유치원교육 활동
-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외에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아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하는 교육·보호 및 활동 프로그램을 의미함.

방과 후 과정 연간 운영 절차(예시)

유운위 심의·자문 절차	추진내용	세부추진내용	주체
① 심의· 자문 전	기초 조사	• 방과 후 과정 소위원회 조직 • 유치원 및 지역사회 여건 및 실태 분석	방과 후 과정 소위원회
	추진 계획 수립	• 방과 후 과정 추진 계획안 작성 • 방과 후 과정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 프로그램 개설 및 관리 방안 마련	
② 심의·자문	프로그램 및 관리 방안 심의·자문	• 방과 후 과정 세부 운영 계획 심의·자문	유치원 운영위원회
③ 심의· 자문 후	확정	•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확정 및 강사 모집 공고 • 강사 모집 관리 및 계약, 연수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운영 계획 수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별 교육활동 전개	
	방과 후 과정 운영 평가	• 방과 후 과정 운영 평가 및 결과 반영	소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방과 후 과정 소위원회 구성·운영(필요 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의 수는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방과 후 유치원소위원회 개최 결과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방과 후 과정 운영계획은 강좌 개설, 운영시간, 강사 선정, 강사료, 학부모 부담금 등 방과 후 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운영시간, 프로그램 개설, 강사 채용, 강사비, 수강료, 비영리단체 위탁 시 위탁기관 선정 등이 본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운영방침에 적합한지, 다른 프로그램과 형평성이 맞는 지 확인
- 수강료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강사비, 수용비, 수강 원아 수 등을 고려한 것인지 확인
- 방과 후 과정 담당자 수당, 냉난방비, 복사기 사용료 등이 적정하게 책정 되었는지 확인
- 강사비는 강좌의 특성 및 수준에 따라 적정한지, 사교육비 경감 목적에 맞는 지 확인
- 방과 후에 운영되는 특성에 맞게 안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 대책이 적절한지 확인

방과 후 과정 운영계획의 심의·자문 사항 기준

구분	내용
운영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 방과 후, 주말, 방학, 토요일휴업일, 자율휴업일 등에 운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아,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 학업능력 신장, 인성·창의성·특기 계발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운영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체를 민간 위탁 가능 · 강사는 내부강사 또는 외부강사 모집(제용) · 해당 유치원, 인근의 타 유치원,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활용하여 운영 가능 ·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운영 시간의 적절성
수강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방과 후 과정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책정

3 유차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차원급식

목적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종일제 운영 및 원아 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
- 수요자 중심의 급식운영과 안전하고 맛있는 유차원급식 제공을 위해 유차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차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유차원급식에 대한 주요 심의·자문 사항

- 유차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유차원급식운영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유차원장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유차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급식계획 및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식생활 지도 등 급식운영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유차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유차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 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식재료 공급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유차원급식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결정하여야 함.
 - 학부모 부담 경비 관련 안전 심의·자문 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유차원운영위원회 회의 시 반영하여야 함.
(예 : 가정통신문, 온라인 의견 조사 등을 통해 안전 내용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심의·자문 전에 수렴하여 유차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보고)
-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유차원급식소위원회 활동 등 유차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방법에 대해 심의·자문을 거쳐야 함.



- 유치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 절차(예시)

① 심의·자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인근유치원의 급식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계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하여 유치원급식 세부운영계획(안) 마련 • ‘유치원급식소위원회’에서 유치원급식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실무 검토
↓	
② 심의·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계획 및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식생활지도, 우유급식 등 급식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자문
↓	
③ 심의·자문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계획 및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식생활지도 등 급식운영계획 수립·추진 • 유치원급식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보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2010년부터 교육감 및 지자체장들의 공약사항으로 무상급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도교육청 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기본방침에 따라 결정함.
- 보호자 부담경비에서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시설·설비 유지비는 부담할 수 없음.
- 우유급식은 학부모 설문조사(희망조사) 후 실시 여부를 판단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직계 가족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자인 경우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식재료 관련 심의·자문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관련 법령

유아교육법 | 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 제19조의4제1항 제5호

-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제3조 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참고 1

유치원급식소위원회 구성·운영(예시)

◆ 목적

-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유치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구성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중 유치원급식에 전문성 및 관심이 있는 자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아닌 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유치원운영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유치원구성원 중(교직원, 학부모)에서 유치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 등
- 구성인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가급적 학부모위원이 1/2 이상 되도록 구성
- 유치원급식소위원회에 영양(교)사 또는 유치원급식담당자가 간사로 참여
 - 공동조리학교에서는 비조리교와 공동으로 설치·운영

◆ 역할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유치원급식에 관하여 심의·자문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실무검토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유치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본회의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주요활동내용

- 식재료 업체선정을 위한 현장평가
-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등 그 밖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활동으로 정한 사항 등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참고 2

유치원급식소위원회 규정(예시)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조 및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따라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치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 점검
2.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방문
3. 유치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4. 그 밖의 유치원급식과 관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등

제3조 |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지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1/2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제4조 |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 위원장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 회의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양(교)사로 한다.

제8조 | 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 | 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3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목적

법령에 규정된 사항과 유치원장의 고유 권한 사항을 제외한 유치원의 발전과 교육의 내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언제든지 제안·건의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할 수 있음.

주요 제안 및 건의사항

◆ 학부모의 유치원참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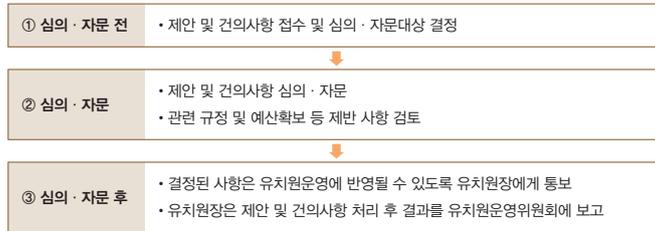
-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모니터링
-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 학부모의 교내·외 자원봉사 지원 등

◆ 지역사회분야

- 지역사회 복지센터, 노인 회관 등과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
- 유치원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유치원주변 유해환경업소 조사, 유치원 주변 폭력방지 순회 지도, 각종 장학금 유치 등)



추진 절차 | 예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시 고려사항

-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세부적으로 검토
-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유치원장의 고유권한인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이 아님.
- 건의자의 건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소개한 운영위원은 건의자와 연락 체계를 유지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 활동계획(예시)

월별	활동계획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안 수립 유치원급식 운영 계획안 심의·자문 유치원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 유치원 규칙 개정안 심의·자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위원회 규정정비(유아 수 변동에 따른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자문 유치원회계 예산안 심의·자문 원아 체험활동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원복, 체육복 선정 및 졸업앨범 제작안 심의·자문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활동(운영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1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 유치원회계 결산안 심의·자문(유치원실정에 따라 4월에 심의·자문 가능)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운영위원회 활동사항보고서 작성 및 홍보 원복 및 체육복 선정안 심의·자문(하복) 앨범제작안 심의·자문 (춘계)체험학습안 심의·자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문 ※ 운영위원 연수 실시 - 유치원운영위원회 전반사항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자문 교구 등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자문 ※ 운영위원 연수 실시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현안 사업 협의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자문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사립 제외, 2013.3.1 시행예정)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자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안 심의 · 자문 • 2학기 주요 교육사업 협의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자료 선정안 심의 · 자문 • (추계)체험학습 계획안 심의 · 자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복 및 체육복 선정안 심의 · 자문(익년도) •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심의 · 자문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자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 · 자문(사립 제외, 2013.3.1 시행예정) • 익년도 교구 등 교육자료 선정안 심의 · 자문 ※ 운영위원 연수 실시 - 예산의 편성 및 심의 · 자문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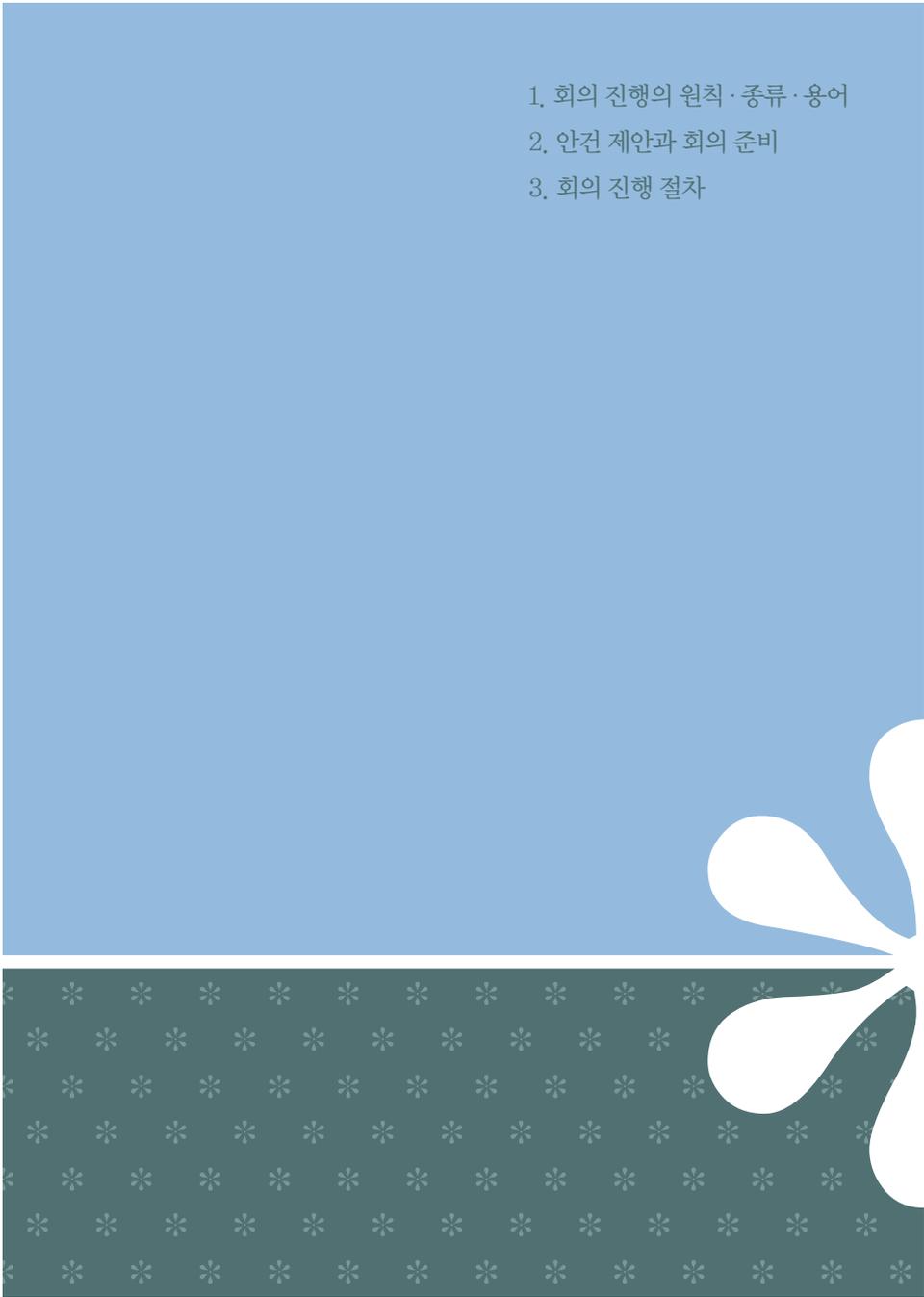
- 위 심의 · 자문사항에 대하여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을 함.
- 상기자료는 예시안이므로 유치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1.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2. 안건 제안과 회의 준비
3. 회의 진행 절차



회의 진행의 원칙·종류·용어

회의종류

◆ 시기에 의한 분류

- 정기회 :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 기일에 하는 회의
- 임시회 : 유치원장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로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

◆ 회의의 형태에 의한 분류

- 본회의 :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 심의·자문, 규정개정 등 주요 안건의 처리
- 소위원회 :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 유치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

회의진행의 원칙

◆ 발언자유 원칙

- 발언자는 발언 도중에 타 위원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받음. 그러나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자의 발언 제지·퇴장을 명할 수 있고,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폐회·정회할 수 있으며, 속개되는 회의에서 중단되었던 위원의 발언 지속에 대한 권한을 가짐.

◆ 일사부재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음. 이는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돕고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함임.

◆ 회의공개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 민주적인 회의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함이 원칙임(특별한 경우 제외). 회의 진행과정 공



개 및 사전에 회의개최 안내(가정통신문, 유치원 게시판,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최 일자, 안건 공개)까지 포함.

- 운영위원 외 회의 방청객은 회의 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발언할 수 없고, 위원장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음.

◆ 회기 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함. 한 회기 내 처리 못 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김.

-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처리 못 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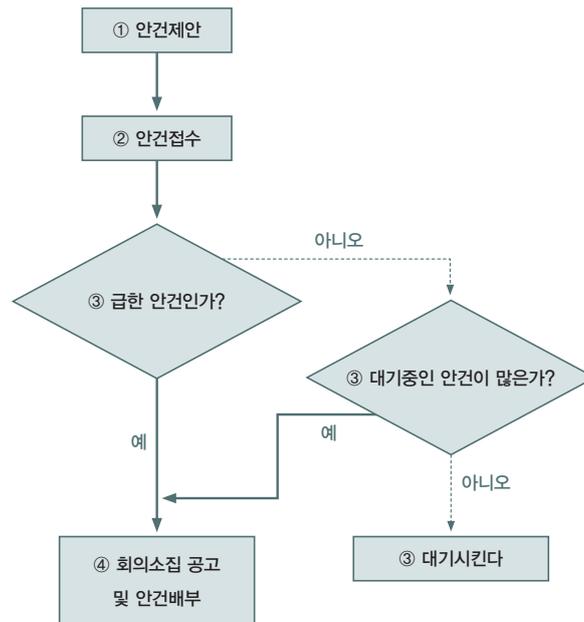
◆ 1일 1차 회의원칙

- 회의는 1일 1차 회의만 개최 가능, 유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였을 경우,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음(단, 오후 12시 이후까지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수 변경을 하여 다시 회의 가능).

안전 제안과 회의 준비

회의 준비 과정도

다음 표는 안전이 접수된 후부터 회의 및 안전을 공고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임.





안건 제안 및 회의 준비 절차

① 안건 제안

- 안건의 제출과 발의
 - 안건 제안 : 유치원장 또는 각 시·도 조례가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직위원이 함.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며,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부함.

안건 제출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1. 공통필수 : 안건제안 서식, 안건 본문
 2. 유치원장이 안건을 제출할 경우 : 의안제출 공문(의안발의서)
 3. 위원들이 제출할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자문과 직접 관련한 서류에 대하여 유치원장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요구하여야 함.

② 안건의 접수

- 안건접수처리 : 유치원 내 유치원운영위원회 사무처리 부서
- 안건접수과정 : 안건 제출 → 위원장 결재 → 안건 접수대장에 기재 → 유치원장에게 보고 → 유치원 운영위원장이 접수된 안건 검토 → 회의 개최 여부를 유치원장과 협의

③ 안건의 처리

- 안건처리 : 위원장은 안건을 최소 회의소집 7일 전 소집공고, 개별통지로 위원들에게 알려 함.
- 임시회 :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유치원장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소집이 가능함.
-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된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안건의 시급성·중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하고, 경미한 안건은 여러 개 같이 처리 가능함.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④ 회의소집 공고

- 회의소집 공고 :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대신함. 위원장·부위원장 부재 시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유치원장, 연장자 등)으로 정함.
- 정기회 : 별도의 집회요구가 필요 없음.
임시회 : 유치원장 혹은 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적위원 명단과 문서를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회의 일시의 결정 : 위원장이(유치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운영위원들의 참석이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함(예 :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 공고 시기 : (최소)집회 7일 전까지(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음)
- 공고 철회·변경 : 집회공고 후에는 변경, 철회 불가함(단, 여건이 변경되어 심의·자문할 안전이 없게 되거나 집회공고 전에 집회요구를 철회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
- 공고 내용 : 당일의 회의 차수, 회의 개최 일시,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 포함(위원 개별통지 내용에는 소집공고 및 심의·자문 안전을 덧붙여야 함).

* 누년일련 회의 차수 부여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 산정, 회기번호는 반드시 누년으로 회의차수 부여
 - 최초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10년 까지 총 10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2011년 10회 회의를 개최하였다면, 2012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회의차수는 제111회 임시회(정기회)가 됨.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

- 상임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소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함.
- 소위원회 구성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는 경우 : 미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을 먼저 심의·자문하게 하고 다음에 이 사실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본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소위원회 일정을 보고받아야 함.

4 유차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참고 1

유차원운영위원의 안건 발의 예시안

안 건 발 의 서

2012. 0. 0.

수신 : 유차원운영위원회위원장

제목 : ○○ 실시에 관한 건

위의 ○○실시에 관한 계획안을 ○○시·도 운영위원회 조례

제○○조 제○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 실시 계획(안) 1부, 끝.

발의자 ○○○ 인 외 ○인

※ 찬성자 서명날인

찬성자		서명·날인	비고
직위	성명		

*예시

○○실시에 관한 건

안건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2 0. 0

발의자 : ○○○위원 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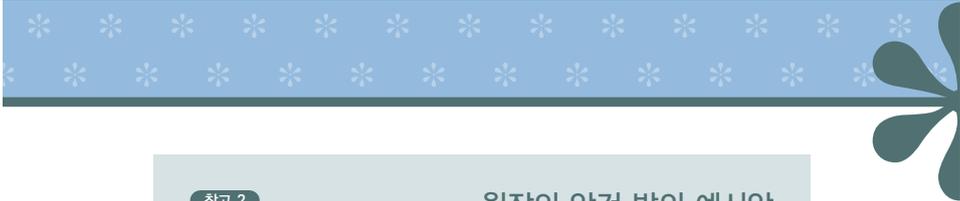
1. 제안이유

유차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 ○○실시 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액	비고

3. 기타사항



참고 2

원장의 안건 발의 예시안

안 건 발 의 서

2012. 0. 0.

수신 : ○○유치원운영위원회위원장

제목 : ○○ 실시에 관한 건

- 위의 ○○실시에 관한 계획안을 ○○시·도 운영위원회 조례 제 ○○조 제○항(○○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따라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자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 1부. 끝.

*예시

○○○안

안건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2 0. 0
발의자 : 원장

1. 제안이유

유치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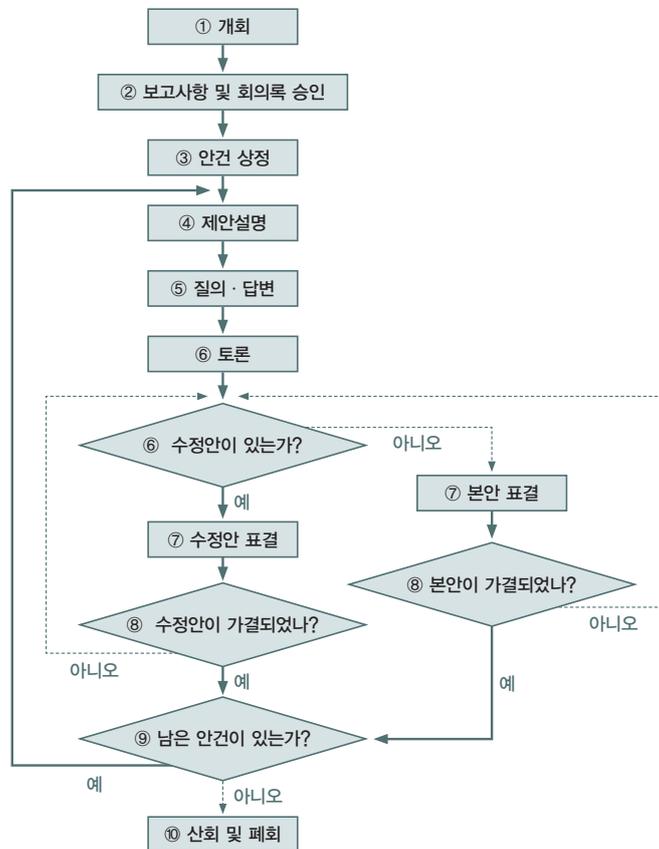
2. ○○실시 계획

사업명	사업개요	소요액	비고

3. 기타사항

회의 진행 절차

회의진행 과정도





회의진행 절차

① 개회 및 개회선포

개회식 진행(개회선포 및 국기에 대한 경례)은 간사가, 개회선포 이후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함.

(예 : 개회(간사) → 국민의례(간사) → 개회사(위원장) → 유치원장 인사 → 개의(위원장))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보고사항 : 간사가 전(前) 회의 때의 심의·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보고함. 회의 도중 중요한 사항,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직접 보고 가능함.
- 회의록 승인 :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음. 위원장이 회의록 승인을 선포하고, 승인된 회의록에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함(단,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이를 수정한 후 승인을 선포).
- 보고할 건수가 많은 경우, 종류별로 총 건수만 보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는 방법도 가능함(보고사항은 보고로써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의 대상은 될 수 없음).

③ 안건 상정

- 안건 상정 또는 의사일정의 상정 :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함.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함(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 → 제안 설명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함).
- 위원장은 필요 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함.

④ 제안 설명

- 제안 설명 :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유치원장이 안건을 제안한 경우는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 설명할 수 있음.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를 보고함.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단 전문가 의견 청취는 제안 설명 후에 함).

⑤ 질의·답변

제안 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전에 대해 의문사항을 질문.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전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함. 질의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함.

⑥ 토론

- 토론 순서 :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하는 것이 좋음.
-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함.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 다음 수정안을 처리함.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함.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표결 : 안전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서 시행함.
- 표결선포 : 표결 시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함.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봄.
 - 이때, 표결결과 선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침. 하나의 안전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상정된 또 다른 안전이 있을 경우 안전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절차를 진행).
 - 의안 결정 후 :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음. 이를 의안 정리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행함.



*** 표결 시 지켜야 할 원칙**

- 1 **표결 정정의 금지** 위원이 일정한 시점에서 찬·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떤 착오가 있더라도 정정할 수 없다.
- 2 **조건부 표결의 금지** 표결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표결방식**

거수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하는 위원의 손을 들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 토론이나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음.
기립표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성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반대하는 위원을 일어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
무기명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가·부만을 기재하여 표결하는 방법 • 각종 선거, 자격심사, 징계, 불신임 등 인사와 관련된 경우에 주로 사용함.
기명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위원의 성명과 가·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수나 기립 등에 의한 표결도 가능할 것이나 각종 선거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 등에는 적합하지 않음.

㉔ 산회 및 폐회

- 산회 : 당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을 때 위원장이 당일 회의의 종료를 공식선언하는 것으로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함.
- 폐회 :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함. 하루 만에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산회 선포에 이어 폐회선포를 하게 되므로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할 필요가 없음.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회의종료 후 처리사항

- 회의종료 후 :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를 유치원장에게 알려야 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함.
- 회의결과의 이송주체 및 기간 : 이송자(주로 위원장)는 유치원장에게 결과를 이송함. 이송기간은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회의 결과 이송 사항

- 유치원 규칙의 개정 시 그 본문
- 예산안일 경우 예산 내용(수정안 경우 수정 내용)
- 동의안 승인안의 경우 본문
- 건의안, 결의안의 경우 주문
- 청원인 경우 청원서

- 회의결과 이송 시 필요 서류 : 본 회의 시 채택한 의견서, 위원장의 이송공문을 함께 첨부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송하여야 함.
- 한편, 원안이 심의·자문과정에서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완전한 하나의 의안을 만들어 이송함.
 -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유치원장에게 이송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차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함.
 - 제안된 안건이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요구하는 사안이거나 학부모들이 숙지해야 할 사안인 경우,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즉시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함.
 - 회의 결과 통보 시에는 회의록 사본도 첨부함.
- 회의록의 작성
 - 회의록 작성자 : 간사가 작성.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작성토록 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간사가 소위원회 회의록도 작성가능).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 포함 내용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
- 회의록 작성 시 발언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함(정확성을 위하여 발언내용을 녹음하여 추후 회의록을 보충할 수 있음).

*** 회의록 기재 사항 | 예시**

- 개의 일시 및 차수
-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의사일정 및 부의된 안건과 그 내용
- 출석 위원의 성명과 수
- 출석 교직원의 성명과 직위
- 위원 및 소위원회 위원 이동
- 각종 보고사항
-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송, 이송, 철회에 관한 사항
- 표결결과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 서면 질문과 답변
- 위원의 발언 보충서류
- 각종 보고서 제출 현황
- 개회식에 관한 사항

- 추가사항 : 위의 사항 외에도 발언 위원이나 기타 위원이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자료 등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회의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음.
-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유치원장이 서명함.

4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

* 회의록의 공개

1 작성된 회의록은 유치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원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7

2 회의록 공개 시 발언내용을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실명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원아 교육, 교권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단, 비공개 회의록이라도 위원이 열람을 신청한 때에는 공개함.

회의 시 유의할 사항

◆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함.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함.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함.

◆ 발언 시 유의할 점

- 일반적으로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 시 발언할 수 없으나, 일부 시도의 조례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함.
-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 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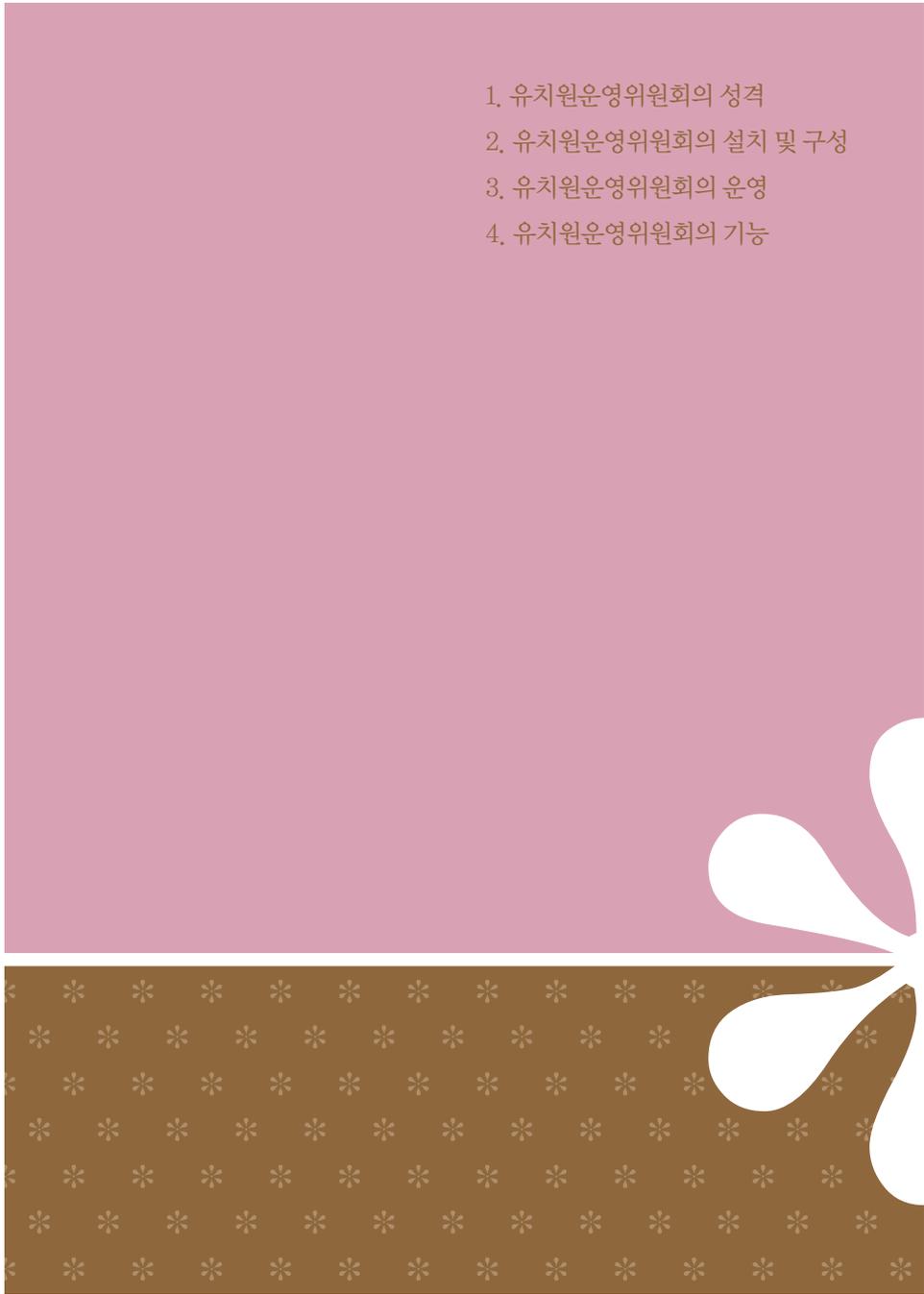
-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음.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함.
- 발언 시 바른 자세로 위원장을 보고 말함.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 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 됨.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함.
-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함. 질문 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함.
-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음.
- 답변 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 말아야 함.
-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함.
-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등 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함.
- 답변을 마친 후 “답변이 되었는지요?” 같은 확인질문을 함.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음.

5*

유치원
운영위원회 관련
문고 답하기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4.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5* 유차원운영위원회 관련 물고 답하기

일러두기

본 물고 답하기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입법 취지 및 당해 유차원 규정으로 위입된 사항 중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응답은 지침이나 예규적 성격은 아니며, 단위 유차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리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급 유차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유치원장은 그 심의·자문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 유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9).
- 관할청은 국·공립유치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제30조).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유치원의 집행기관은 유치원장 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유치원장에게 있음. 따라서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와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검토 시에 심의·자문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함.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자문 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유치원의 범위는?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 유치원과 유아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 설치함.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4항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 법 제19조의3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 각각 1명 이상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위원의 정수는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 유아교육법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와 같이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이 없는데 위원 후보자나 선출된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할 경우 위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 병설된 유치원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위원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 조항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위원의 결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한편, 별도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 후보나 선출된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되어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원에서 배제할 수 없음. 다만 교육적 취지에 맞게 결격 사유가 있는 학부모가 운영위의 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선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 법에 선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 수의 과반수 미만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음.

◆ **병설유치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거나, 교감이 원감을 겸직할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이 유치원 교원대표가 될 수 있는지?**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이기 때문에 원장은 유치원 교원대표로 선출될 수 없음.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2에 의해 교감이 원감을 겸임하도록 인용된 경우에는 유치원 교원대표로 선출될 수 있음.

◆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함.
- 위원 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음.
- 또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 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 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음.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 해야 하는가?

- 정해진 정수 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투표 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3항).

◆ 소속 유치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유치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 소속유치원 교사도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인 유치원장의 검칙허가를 받아야 함.

◆ 소속유치원을 달리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의 연임 여부?

-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유치원의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 다른 유치원의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함.



◆ 교사가 타 유치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교원위원에게도 적용됨.
- 운영위원도 유치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교사가 타 유치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유치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운영위원 결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시·도 조례에서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일부 시·도 조례에는 위원이 결원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물고 답하기

◆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임후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하게 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 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후보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운영위원의 보궐선출 시 시기와 절차는?

- 위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도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정이 없을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선출하여야 함.
-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신설유치원의 최초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 신설유치원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함.



◆ 학부모의 정의는 무엇이며, 부모가 바쁠 경우 조부모가 위원선출 등에 대신 참가할 수 있는가?

- 법정기구인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학부모의 정의는 유아의 법적인 보호자를 의미함.
-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함.

◆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 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 중인 교사도 당해 유치원에 소속하고 있으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음.

◆ 연임이라는 것이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연임은 임기가 끝난 후 계속하여 다시 선거에서 선출되면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이와 유사한 의미로 중임이 있으나 중임은 어떤 사람이 이미 맡은 적이 있는 직위나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중임을 제한할 경우 연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는 그 직책을 맡을 수 없음.
- 어떤 시·도의 조례가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횡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연임과 중임이 모두 가능함.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물고 답하기

-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소속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유치원 학부모 위원이 초등학교 학부모 위원을 계속할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
 -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연임에 해당함. 단, 조례로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 ◆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국적이 외국일 경우, 유치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지? 참고로, 이 사람은 원 국적이 한국국적이었으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이 외국국적으로 변경되었음.
 -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은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며, 법률에 외국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녀가 해당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유치원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음.

- ◆ 원아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학부모위원의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 원아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학부모위원의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함. 다만, 당해 원아의 부모가 진실로 있지 아니한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자 하는 자가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 학부모위원 선출 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원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참석 학부모의 이름으로 작성하는지?
 - 원아 기준으로 父, 母 모두를 이름으로 작성하여 선거 당일 참여자 1인만 인정함.



◆ **유치원운영위원 선출방식은 연기명식과 단기명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하여 실시해야 하는지?**

-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 결정하여 실시 가능하나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특정인을 선출할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 됨.

◆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는?**

- 원아의 졸업과 동시에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고 보아야 함.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서 별도로 자격 상실 시기를 정할 수 있음.
- 위원 결원으로 인한 보궐선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기만료 및 결원 수 등 보궐선출 요건을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동시에 결원된 경우에는 유치원장이 임사회를 소집하여 위원 중 1인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함.

◆ **운영위원 입후보 등록 후 후보를 사퇴할 경우 언제까지 사퇴가 가능한지?**

-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 실시 전까지 후보 사퇴가 가능함.

◆ **당해 유치원 규정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 시 교원 1인당 복수추천이 가능한지?**

- 교원위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당해 유치원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교직원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함.

5 * 유차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가 투표권이 있는지?**
 -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있음.

- ◆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 여부는?**
 -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로 당선된다고 할 것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여야 할 것임.

-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사유로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는가? 또한, 무투표 당선의 시점은 언제인가?**
 - 선거공보는 후보등록자에 관한 사항을 선거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등록 현황을 알려야 하며,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고하여야 함.
 - 무투표 당선의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을 결정하고 당선통지서를 교부하면 됨.

- ◆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 보궐선출이 아닌 한 임원의 선출 시기는 유차원규정에 정한 임기 개시일 이후가 합당하며,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



◆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시 선출방식을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바꾸고 선거를 실시하여도 되는가?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2항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음.
- 간접선거는 유치원의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단지 보궐선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유치원 편의의 간접선거는 적법하지 않음.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 출타한 경우 회의소집 가능 여부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유치원 규칙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함. 보통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치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참석자 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 진행할 수 있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름.

◆ **회의록 승인 시 녹취한 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간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녹취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가?**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시 전 회의 회의록 승인과정에서 회의록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회의록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녹취한 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 이때 간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녹취 테이프 복사는 불가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나, 녹취 테이프는 회의록 작성 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보조수단이며, 회의 시 회의록의 일정 부분을 삭제·조정·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 필요하므로 대외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 간사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음.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 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님.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행정실장이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유치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안전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음.

◆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 법령 및 규정에 유치원 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유치원 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함.
-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회 중에는 위원장이 허가할 수 있음.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유치원에 서류 제출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안전의 심의·자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유치원에 서류제출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전의 심의·자문을 위해 유치원장에게 서류 제출이나 답변을 요구할 경우 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② 서면으로 ③ 일정 기간 전에 ④ 요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유치원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 경우에 반드시 안전의 심의·자문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안전의 심의·자문과 상관없는 사실상 유치원장의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조사·감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
-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 등은 행정체계 내에서의 지도·감독권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할 것이며, 심의·자문기관인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일이 아님. 유치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 출장 또는 회의 개최 시 운영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탄핵할 수 있는가?

-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조례 등에의 위임)에서는 “국립·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단위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운영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운영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단위유지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므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시 「과반수」의 개념은?**

-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로, 1/2 이상이 아니고 1/2을 초과하는 수이어야 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심의를 진행할 경우, 자격 상실 대상자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유아교육법 제22조의4 제5항에 따른 자격 상실 대상자가 본인의 자격 상실에 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1 및 제22조의12 제6항에 따라 조례 또는 유치원 규칙·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 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근무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 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개인적 용무로써 업무상 출장 처리는 불가함.

5 * 유치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업체 선정도 할 수 있나?

-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업체)의 결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님. 유치원의 물품구입 및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사무는 계약의 당사자인 유치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한 책임도 유치원장에게 있다 할 것임.
-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유치원장에게 있음.

◆ 유치원시설공사 시행 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인지?

- 유치원시설공사는 유치원장의 권한으로 당해 유치원 운영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한바 없다면 심의·자문대상은 아님. 다만 공사 집행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유치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유치원장을 통해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음.

◆ 유치원급식 업체 선정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인가?

- 유치원급식 업체 선정은 유치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치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음. 다만, 그 심의·자문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유치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졸업앨범' 심의·자문 시 어느 수준까지 심의·자문하는 것인지?

- 학부모의 부담사항인 앨범, 체육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제작 여부, 선정 시 색상, 디자인 등 사양 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임.
- 구체적인 업체선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유치원장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제작방법, 사양,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이라고 볼 수 있음.

연구보고 2012-22

유치원운영위원회 추진 방안 연구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7492-35-0 93370